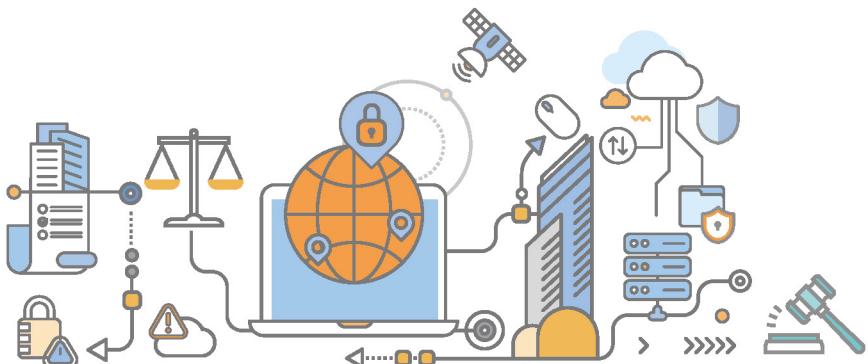


2022.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주의 사항

- 본 해설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취지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이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지도의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본 해설서의 판권은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허가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또한,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 배경 및 연혁	2
2. 주요국 위치정보 입법 현황	10
3. 법률의 주요 내용	17

II

법률의 적용대상 등

제1조 법률의 목적	20
제2조 용어의 정의	21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3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III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등	38
제5조의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	42
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45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47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51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56
제9조의2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60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64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등	66
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	68
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71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75

IV

위치정보의 보호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82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88
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92
제17조의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94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95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98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102
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104
제21조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106
제22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107
제2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110

V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114
제25조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권리	117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119
제27조 개인위치정보주체 손해배상	121
제28조 분쟁의 조정 등	123

VI

긴급구조 등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126
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134
제30조의2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136
제31조 비용의 감면	137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138

VII

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 등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140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141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143
제35조의2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144
제36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46
제36조의2 시정조치 등	149
제37조 청문	151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52
제38조의2 별처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53
제38조의3 준용 규정	154

부록1

자주 묻는 질문	155
----------	-----

부록2

법률, 시행령 등	161
-----------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3

법령서식	221
------	-----

부록4

(참고) 이용약관 예시안	237
---------------	-----

1. 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안)
2.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I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 배경 및 연혁
2. 주요국 위치정보 입법 현황
3. 법률의 주요 내용

1. 입법 배경 및 연혁

가. 입법 배경

(1) 위치정보의 활용 증가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지식 산업의 진전과 더불어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정보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위치정보는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IT기술을 바탕으로 수집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모듈을 장착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 무선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1970년대 초 미국 국방부 주도로 지구상에 있는 물체나 사람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위성항법장치 즉,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도 위치정보 수집을 위해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이 외에도 RFID, 비콘(Beacon) 등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위치정보가 수집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무선통신망이나 GPS에 기반을 둔 측위방법이 아니면서 실내 환경에서도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Wi-Fi, VL(Visual Location) 등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측위기술의 발달은 수집된 위치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가져왔다. 이것은 지금의 정보사회에서 위치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정확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개인에게 보다 다양한 형태의 높은 질적 수준을 가진 위치기반서비스(LBS : Location-Based Services)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여행자가 휴대한 스마트폰을 통해 여행지에 대한 특별한 광고를 제공하거나 교통상황안내, 길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물건이나 차량 등에 위치수집장치를 부착하여 물류관리, 차량관제의 목적으로도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긴급구조, 재난·재해 등에 대한 경보발송, 미아 찾기, 도난차량 추적, 경호서비스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도 위치정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치정보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서비스 분야가 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O2O(Online to Offline), 안전서비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에서도 위치정보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치정보의 활용 증대 경향은 위치정보가 차세대 산업의 핵심 자원임을 짐작케 한다. 영국의 기술 및 시장 분석 전문기업 ‘테크내비오(Technavio)’는 2017년도 보고서에서 전 세계 LBS 시장규모가 2016년 180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9.77%로 성장하여 2021년 9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¹⁾ 또한, 우리나라의 LBS 시장 매출액 규모도 2019년 1조 5,918억원, 2020년 2조 2,827억원, 2021년 2조 6,279 억원으로 성장하였고, 2022년에는 3조 550억원의 매출액이 예상되는 바, LBS 시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²⁾된다.

(2) 위치정보 법제의 필요성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은 차세대 핵심 응용서비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치정보는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높은 정보사회의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에 달라 수시로 변동되는 복합적·동태적 특성을 가진 정보로서,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될 때에는 특정인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지도 추측케 한다. 즉, 일정한 기간 동안 수집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로파일링 작업을 통해서 해당 개인의 주요 활동환경이나 이동 방향, 취미나 관심사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며, 오·남용시 심각한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치정보는 사회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순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라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아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위치를 추적하거나 응급진료서비스를 요하는 환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같이 급박하고 중대한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어 위치정보가 사회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반면, 특정인을 부당하게 감시하거나 범죄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도 높은 것이다.

이렇듯 위치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용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신체의 자유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정보의 역기능을 적절히 차단하면서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가 보다 광범

1) Technavio, “Global LBS Market 2017–2021.”

2)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1.

위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입법의 의의와 과제

방송통신위원회(舊정보통신부)는 2003년부터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근간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005년 1월 27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역기능적 측면인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최소화하되 위치정보를 매개로 하는 신성장 산업을 촉진·육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익보호와 아울러 위치정보의 산업적 이용 보장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인위치정보가 범죄자에게 노출될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활동반경이나 이동습성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절차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나, 긴급구조 등과 같이 신속하게 위치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치정보의 건전한 활용도 보장되어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통신기술, 측위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해당 산업의 발전 및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나. 연혁



2005.1.27.

법률 제정(법률 제7372호)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 보안, 상거래 등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도, 위치정보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위치정보법은 '04년 9월 22일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04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하였다. '04년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5년 1월 27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2006.9.27.

일부개정(법률 제8002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형제·자매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살기도 등의 긴박한 경우에 그 위치추적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되므로 앞으로는 형제·자매도 위치추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으로 개정하였다.



2007.12.21.

일부개정(법률 제8775호)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상호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에 갈음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변경허가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며,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가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신청 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2009.3.13.

일부개정(법률 제948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치정보기술 표준화의 대상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2010.3.17.

일부개정(법률 제10137호)

종전 양별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별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2012.5.14.

일부개정(법률 제11423호)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관서에는 개인위치정보 획득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을 통해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4.10.15.

일부개정(법률 제12840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다. 이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였다.



2015.2.3.

일부개정(법률 제13203호)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하며,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15.12.1.

일부개정(법률 제13540호)

개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현행법과 취지와 기능이 유사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조사회사의 결격대상을 임직원인 종사자로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았다.

제6조의 제목 중 "임원의"를 "임원 또는 종업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다."를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퇴직한다."를 "퇴직하고, 접근권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접근권한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위는"을 "행위 또는 접근권한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업원이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으로 개정하였다.

위치정보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대상에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인 종업원을 추가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였다.



2018. 4. 17.

일부개정(법률 제15608호)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후 1개월간 사전 신고가 면제되나,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신고를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공개 의무로 개정하였다.

한편,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는바, 일본어 또는 한자어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순회하였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난 또는 재해 위험지역에 경보 발송을 한 경우의 통계자료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하였다.



2018. 12. 24.

일부개정(법률 제16087호)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개정하였다.



2020. 12. 8.

일부개정(법률 제17633호)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동시에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2021. 10. 19.

일부개정(법률 제18517호)

해당 일부개정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사후규제를 정비였다.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으로 정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과 관계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제2조제1호 개정)하였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 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규정(제14조 개정)을 추가하였고, 법을 위반한 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36조의2 신설)을 두었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할 때 개인위치

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동의 받도록(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제1항 개정) 하였으며, 종전과 달리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파기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인정보의 파기 규정(제23조제1항 단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 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개인정보의 유형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제29조제5항 개정) 하였다.

2. 주요국 위치정보 입법 현황

가. 미국

(1) 개요

과거부터 위치정보에 관한 입법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에도 현재 위치정보, 위치프라이버시(location privacy/ geolocation privacy)에 관한 연방법은 없으며, 대부분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치정보를 입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선통신과 「공공안전법(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 제222조에 따른 “고객 소유 네트워크 정보(CPNI: 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로 분류한 바 있다. 위치정보는 CPNI로서 고객의 명시적 사전승인(Customer's express prior authorization)이 없는 사용 또는 공개·접근이 금지된다. 또한, 미국은 “911 서비스”에서 있어서 위치정보 관련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반영하여 이동통신서비스로부터 유래된 위치정보를 CPNI(고객 소유 네트워크 정보)로 정의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협조사항(Enhanced-911)을 규정하였다. 즉, 2000년 8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개정 「통신법」 제22조에 따라 연방규정(FCC Wireless 911 Requirements)을 제정하여, 경찰·소방 등 공공구조기관(Public Safety Answering Point)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발신자의 위치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ALI(Automatic Location Identification)를 통해 수집된 위치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통신법은 개인정보의 범주에서 위치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의 특수성이 고려된 특별한 취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City of Seattle's Privacy Policy는 PII의 법적 정의에 location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개인정보는 성명, 집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사회보장번호, 종교, 정치적 견해, 금융 또는 건강 기록, 위치 및 인종·민족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현재 Geo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에 관한 복수의 입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다(S. 237, H. R. 656, S. 2270).

(2) 「위치프라이버시 및 감시법(안)」(Geolocation Privacy and Surveillance Act, S. 237) (GPS Act, S. 237)

「위치프라이버시 및 감시법(안)」은 위치정보(geolocation information)를 개인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의 내용이 아니면서, 무선(wireless)통신장비 또는 추적장비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장비의 운영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가 유래되거나 생성된 것으로서, 개인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거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동 법안은 타인의 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별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2602 (a)), 위치정보의 누설도 금지하고 있다(§2602 (i)). 그러나,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아동의 부모 및 법적후견인에 대한 특례와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및 응급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3) 「위치프라이버시 보호법(안)」(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15, S. 2270)

위치정보(geolocation information)를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통신장비의 사용 또는 작동으로부터 유래되거나 생성된 것으로서, 통신의 내용이 아니면서, 해당 장비가 위치한 도로명과 도시명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전자통신장비는 전자통신시스템, 전자통신서비스, 원격컴퓨팅서비스 또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들에 접속할 수 있는 전자통신장비로 정의된다. 또한, “(지리)위치정보서비스”란 GPS 또는 그 밖의 지도, 위치 또는 방향안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개인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후견인의 위치를 찾기 위한 경우, 화재·의료·공중안전 그 밖의 응급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경우, 통신망운용을 위한 경우, 상기의 상황에서 오직 정보전송만을 위한 경우 또는 대상자의 재산 및 대상자의 고객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없이 수집·제공할 수 있다. 그 외에 **反스토킹**을 위한 보호와 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가정폭력·스토킹에 이용되는 위치정보에 대한 대응, 위치정보의 기망적 수집, 스토킹앱의 수익금의 몰수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4) 「온라인통신과 위치정보 보호법(안)」(Online Communications and Geolocation Protection Act, H.R. 656)

「온라인통신과 위치정보 보호법(안)」은 위치정보(geolocation information)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서, 무선통신장비 또는 추적장비의 작동으로 부터 전

부 또는 일부가 유래되거나 생성된 위치에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의 현재 또는 향후, 과거 위치를 알아내거나 추론함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한다.

나. 일본

(1) 개요

일본의 경우 위치정보에 관해 특별한 입법은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과거 우정성(郵政省)의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電氣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10年12月2日郵政省告示第570号))에서 위치정보를 “이동단말기를 소지한 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 규정한바 있다. 현재는 2015년에 개정된 총무성 고시인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電氣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16年8月31日総務省告示第695号, 最終改正平成27年6月24日総務省告示第216号))을 통해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 위치정보의 제공

“위치정보”는 이동단말장치를 소지한 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발신하는 자의 정보가 아닌 것을 말하며, 이때 “이동단말장치”는 이동전화단말기 및 무선호출단말기 외에 네리 전파 등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단말을 말한다. 위치정보는 이동단말장치 소지자의 소재를 표시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하며, 단말 설비 등 규칙 제22조에서 말하는 위치정보보다 넓은 개념이다. 기지국 영역 혹은 위치등록 영역 정도 또는 그것들보다 좁은 범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이용명세에 기재된 착신지역(단위요금구역 등)과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발신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취급이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의 정의에서는 제외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 그밖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제26조제1항).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위치정보는 개별 통화와 관련되는 경우는 통신구성요소이므로,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1항의 통신의 비밀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된다. 이에 대해 통화 시 이외에 이동단말장치 소지자가 영역을 이동할 때마다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위치등록정보는 통화를 성립시키는 전제로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계적으로 전송되는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어국에 축적된 이를 정보는 통신비밀

이 아니고 프라이버시로서 보호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위치정보를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어디에 소재하는가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특히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며 통신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므로 통신비밀에 준하여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외부 제공이 가능한 경우도 통신비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 권리침해의 방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를 가입자 또는 그 지시하는 자에게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위치정보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3자와 제휴하여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회적 유용성과 통신비밀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위치정보를 제공할 것, ② 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이용자의 인식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③ 위치정보에 대해서 적절한 취급을 행하는 것, ④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휴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약관 등의 기재를 통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배려하는 것 등을 말한다.

첫째,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 이용자로부터의 동의 취득은 각각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 개시시점 등에 사전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동의취득은 이동단말장치의 조작, 서면에 의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전체 포괄적인 내용의 동의를 얻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를 특정하는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동의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인식 및 예측가능성의 확보. 화면표시나 이동단말장치의 울림·진동(鳴動)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 제공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이용자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실수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동단말장치의 기능 등에 대해서 충분한 주지 및 주의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위치정보에 대한 적절한 취급.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이동단말장치의 위치정보를 모니터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 설정, 접속단말기의 제한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서 자사의 관리하는 기지국 정보가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지국 정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으로 여겨진다. 또한 GPS 위치정보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하지 않은 위치정보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고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제휴에 관

한 계약과 관련된 약관 등의 기재. 제3자와 제휴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제휴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약관 등에서 제3자에게 상기와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가 확보되도록 담보하거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제공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말한다. 또한 이동단말장치를 물체에 설치해서 그 물체의 소재지 정보를 파악하는 경우라도, 물체를 통해서 그 소지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기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 영장주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수집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을 요구받은 경우에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제26조 제3항). 위치정보는 각각의 통신에 관련하는 경우는 통신구성요소이므로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1항의 통신비밀로 보호된다고 해석된다. 위치정보가 각각의 통신과 관련없이 통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라도 어떤 사람이 어디에 소재하는가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특히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취득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 긴급구조

전기통신사업자는 要救助者(구조·구출을 필요로 하는 자)를 수색하고 구조하는 경찰, 해상보안청 또는 소방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조를 요하는 자의 위치정보 취득을 요구받은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임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해당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제26조 제4항). 통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아닌 GPS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통신 비밀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로 취급해야 할 정보이며 기지국에 관련된 위치정보와 비교하여 높은 프라이버시성을 가진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긴급시에 GPS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① 요구조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절박하고, ② 요구조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GPS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인정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황 하에 있는 자를 수색하고 구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과 지식 및 책임을 가진 구조기관(경찰, 해상보안청 또는 소방 등)에 의해서 요구조자 가족 등 관계자로부터의 신고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전문적 판단을 거치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이를 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구조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구조기관으로부터의 GPS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요청에 대해서 ① 상기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조기관에서 본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② 그 판단의 상당성을 담보할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유럽연합(EU)

EU는 위치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지침들 속에 위치정보의 정의와 수집, 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시킴으로서 규율하고 있다. 전자통신 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2/58/EC(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지침)은 “위치정보(Location Data)”를 “공개된 전자통신서비스 사용자의 단말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는 전자통신망 내에서 처리되는 정보”로 정의한다. 이용자에 대한 고지(처리될 위치정보의 종류, 목적·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 및 이용자의 사전 동의, 이용자의 동의철회권 및 일시적인 수집 거부, 응급서비스 임무수행을 위한 이용자동의에 대한 예외 등을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치정보(Location Data)는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정보로서 사용자의 통신단말장치의 위·경도 및 고도를 말하거나, 행선지 방향, 위치정보의 정확도, 일정 시점에 통신단말장치가 위치한 네트워크 셀(Network Cell)의 식별 또는 위치정보가 기록된 시간을 말한다. 위치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이 요구되며, 가입자나 이용자가 신청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와 기간 내에만 처리가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에게 동의를 얻기에 앞서서 처리되는 위치정보의 유형과 처리목적과 처리기간, 제3자에 대한 제공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가입자가 언제든지 간편하게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자신의 위치정보 처리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한다. EU는 일명 E-112 서비스라고 하는 유럽전역의 공통된 긴급구조 서비스인 LOCUS(Location of Cellular's Users for emergency Services)의 법제화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유럽 공용의 응급전화번호인 “112”에 응답하는 긴급구조서비스센터에 통신사업자가 발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라. 영국

영국의 경우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이 위치정보(location data)를 정의하고, 위치정보 처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다. 위치정보란 전자통신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정보로서 공중전자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의 단말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단말장치의 위도, 경도 또는 고도”, “이용자의 이동방향” 또는 “위치정보가 기록된 시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전자통신네트워크 또는 전자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가입자에 관한 위치정보는 ①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 또는 가입자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또는 ② 부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 또는 가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리될 수 있다. 동의에 앞서서 서비스제공자는 처리되는 위치정보의 종류와 해당 정보의 처리목적 및 처리기간,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동의한 이용자 또는 가입자는 해당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손쉬운 수단을 통하여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긴급전화(emergency calls, 999 또는 112)에 응하지 위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처리의 제한 규정은 배제된다.

마. 독일

『Act on Telecommunications』(Act of June 22, 2004 amended up to the Act of August 7, 2013)에서 위치정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highly sensitive) 정보로서 동의 없이 처리되어서는 아니 되며, 목적범위 내에서만 수집되고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폐기하거나 익명화(anonymous)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프랑스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CSPs)에 의한 위치 및 통신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해서는 『Postal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가 다루고 있다.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는 통신자료는 익명화되어야 한다. 모든 통신자료는 “범죄사실을 발견, 감시 및 소추하기 위한 목적”, “전자통신서비스의 과금 및 결제의 목적” 또는 “동의한 이용자에게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 자신의 통신서비스의 마케팅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보유할 수 있다. 통신 중에 적절한 경로선택을 위한 경우 또는 가입자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한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위치정보는 처리 및 저장될 수 있고, 동의는 언제나 비용부담없이 철회할 수 있다.

3. 법률의 주요 내용

위치정보법은 산업분야에서의 위치정보 활성화와 함께 긴급구조 등 공공분야에서의 위치정보 이용기반을 조성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은 법률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양축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우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의무 도입, 등록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규제제도를 규정(제2장)하는 한편,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기준과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시(제3장)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긴급구조와 재해·재난 등의 경보발송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명시(제4장)하고,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표준화 추진,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을 규정(제5장)하고 있다.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법 제5조)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법 제9조)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사물위치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 사물위치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후 1개월간 신고가 유예되지만,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둘째,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 없이는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15조 및 제40조)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명시 및 동의 의무,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시 통보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사실을 매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8조 및 제19조).

넷째,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 규정이다.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즉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되(법 제23조제1항 본문),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3조제1항 단서)하였다.

다섯째, 의사무능력자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정신장애인(이하 8세 이하 아동 등)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등이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8세 이하 아동 등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법 제26조).

여섯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위치정보주체, 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 또는 목격자, 실종아동등의 보호자 등이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유형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였다(법 제29조).

이하에서는 위치정보법의 각 조문별로 상세한 해설을 담고자 한다.

법률의 적용대상 등

제1조 법률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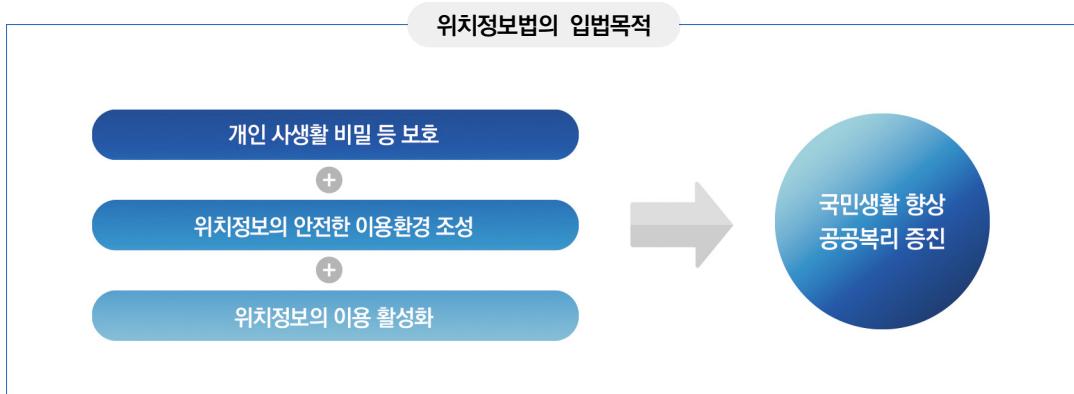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 법률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의 목적

- 위치정보법의 입법목적은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균형있게 추구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즉,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이 적절히 보호될 때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되어 비로소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통해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법률의 입법목적을 밝힌 조항은 법원, 사업자 및 일반 개인 등에게 법률의 해석을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논란이 있는 때에는 입법목적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22., 2015. 2. 3., 2020. 6. 9., 2021. 10. 19.〉

제1호 | 위치정보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3. 22., 2015. 2. 3., 2020. 6. 9., 2021. 10. 19.〉

1. 위치정보

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휴대전화, 차량 등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건물과 같은 이동성이 없는 부동산의 장소나 자연적인 지형·지물 등의 정보는 제외된다.

예시 이동성이 없는 부동산의 장소나 자연적인 지형·지물 등의 정보

이동성이 없는 부동산의 장소등에 대한 정보로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 불해당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 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나. “특정한 시간”의 의미

-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정된 개인의 주소 또는 몇 년 동안 특정 지방에 거주하였다거나 거주사실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외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된다.

다.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정보”의 의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정보”의 의미

-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로 측위되는”의 의미는 기지국, GPS, Wi-Fi, Beacon 등의 측위설비로 수집된 정보이므로, 눈으로 파악한 장소정보,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주소 정보 등은 제외된다.

※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전기통신회선설비 :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

- 개정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의 개념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개념 요소를 측위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측위는 이동성 있는 물건이나 개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위치를 측정하는 행위로 이해하여야 한다
- 다만, 부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더 이상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개정 위치정보법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위치정보에 해당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시 개정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 예시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	내부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획득한 정보 ※ 다만, 단순한 내부 활용 시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주의	부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보라도 제3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위치정보 활용 목적이 있는 정보 ※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에 해당함
카드 결제 시 부수적으로 입수되는 가맹점 장소에 대한 정보	-	특정 장소에 위치한 고객에게 할인정보, 쿠폰 등 컨텐츠정보 제공 서비스를 목적으로 획득한 카드 결제 시 가맹점 장소에 대한 정보
놀이공원 출입 및 놀이기구 이용 시 부수적으로 입수된 정보	-	놀이공원 내 미아찾기, 일행찾기 등 위치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출입기록 및 놀이기구 소재 정보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	내부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획득한 정보 ※ 다만, 단순한 내부 활용 시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주의	부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보라도 제3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위치정보 활용 목적이 있는 정보 ※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에 해당함
피트니스센터 내 출입 및 운동기구 이용 시 부수적으로 입수된 정보	-	회원별 맞춤형 운동센터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입수한 출입기록 및 운동기구 소재 정보
사용자가 직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획득한 출퇴근 기록 정보	-	사용자에게 근태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출퇴근 기록 정보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자가 입주민의 공동현관 출입·출차 관리를 위하여 획득한 정보	-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자 등에게 공동현관 출입·출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정보
-	요양시설 입소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하여 획득한 소재 정보	보호자 등에게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소재 정보
-	유치원 내 영·유아 이탈 방지 등을 위하여 획득한 소재 정보	부모 등에게 영·유아 이탈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소재 정보
학교가 학생의 출결 관리를 위하여 획득한 등하고 기록 정보	-	부모 등에게 학생 출결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등하고 기록 정보

2. 위치정보의 개념에 관한 해외 입법례

구분	개념
EU	<p>〈전자통신 프라이버시 지침 (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2002/58/E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location data)”라 함은 공공 전자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단말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는 전자 통신망 내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단말장치의 현재 위도, 경도 및 고도를 의미하거나 행선지 방향, 위치정보의 정확도, 일정시점에 네 트워크 상에서 단말장치가 위치하고 있는 망 셀의 확인 또는 위치정보가 기록된 시간을 지칭할 수 있음
일본	<p>〈총무성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총무성 고시 제695호, 2016.8.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체 단말기(이동전화기 단말기 및 무선허출 단말기 외 널리 전파 등을 이용하여 통신하기 위해 이용되는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발신자 정보가 아닌 것을 말함
핀란드	<p>〈전기통신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Electronic Communication, 516/20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란 서비스 사용자의 접속 혹은 단말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알려주고 망 서비스나 통신서비스 제공 이외의 추가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를 말함

제2호 | 개인위치정보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

가. “특정 개인”的 위치정보

-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的 위치정보를 말하므로 위치정보를 통해 식별하여 구분할 수 있는 자연인의 위치정보만을 의미하고, 법인이나 단체, 개인 집합체 등의 장소정보는 제외된다.

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 개인위치정보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위치 좌표값과 같이 그 자체로는 누구의 위치인지 알 수 없지만 통신단말기 번호 또는 단말기 소지자의 이름 등과 결합하여 특정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 있다.

다.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

- “용이하게 결합하여”라 함은 결합 대상이 될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 ‘입수 가능성’의 의미는 두 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입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 ‘결합 가능성’의 의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하여도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결합하는데 비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공유·공개될 가능성이 회박한 정보는 합법적 입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자로서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설비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용이하게 결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 결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반드시 하나의 DB 또는 시스템에 함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회사 내의 여러 DB로 분산되어 있거나 제휴회사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결합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도 포함한다.

2. 위치정보간 관계

가. "개인위치정보"와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의 관계

-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 해당 물건 소지자의 이동과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동성이 있는 물건에 부착된 위치수집장치의 목적이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물건 소지자인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위치정보"가 되기도 하고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기도 한다.
- ☞ 따라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물건의 실사용자가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물건 소지자가 상시 소지하는지 여부, 물건의 위치수집의 목적, 물건의 재산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위치정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일반적으로 개인이 항시 휴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사업자가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차량관제 등)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더라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회원가입, 요금정산 등을 통해 개인의 정보와 결합이 된다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될 것이다.

참고 사물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 간 관계 예시

차량의 경우 운전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운전자 개인의 위치가 파악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고 운전자 정보와 연관없이 차량의 위치정보만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에 해당된다.

나. "개인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관계

- 위치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라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넓은 의미의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다만, 개인위치정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1) 사업자에 의해 획득, 제작되는 생성 정보임
-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변동 흐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3) 침해시 생명·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침해위험이 높으며, 행동 반경이나 이동 방향을 유추해낼 수 있어 장래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음
- 4) 긴급구조, 경보발송 등 개인의 생명·신체보호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 가능
- 5) 자율주행, 물류, 차량관제, 교통, 각종 정보제공 등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음

제3호 | 개인위치정보주체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

가. "개인위치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자"의 의미

- "식별"되는 자이므로 위치정보법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를 통해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 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될 수 없다.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법 제3장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규정과 관련하여 동의권, 열람·정정 요구권 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서비스 가입자 또는 이용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예시

-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가 개인위치정보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소지하고 사용하는 자(실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이다. 다만, 물건의 실사용자가 전혀 "식별"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실사용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될 수 없다.

예시 소유자와 실사용자 간 관계

- 1) 휴대전화 가입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주체는 휴대전화의 실사용자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실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어 그를 식별할 수 없는 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로 추정된다. 다만, 이 때에도 휴대전화 가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 2) 자동차의 경우에도 소유주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 위치정보의 주체는 자동차의 실사용자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실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어 그를 식별할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개인위치정보주체로 추정된다. 실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없고 자동차 소유주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제4호·제5호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 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 위치정보사업자가 특정 시점에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존재하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위치정보 수집자, 수집요청자,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 등을 말한다.
※ A이동통신사업자가 2019. 6. 7. 14시 20분, B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Cell-ID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예시

수집대상	수집자	요청서비스	요청자	수집방법	수집요청시간	수집종료시간
개인위치정보주체	A사업자	친구찾기	B사업자	Cell-ID	2019.06.07. 14:20	2019.06.07. 14:25

2.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특정 시점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의 장소에 관한 위치정보를 취득하여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에 관한 자료로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 등을 말한다.
※ 2019. 6. 7. 14시 20분부터 25분까지 C이용자에게 SMS 및 이메일로 A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친구 찾기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였다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예시

수집대상	취득경로	제공서비스	제공받는 자	제공시간	제공방법
개인위치정보주체	A사업자	친구찾기	C 이용자	2019.06.07. 14:20~25	SMS/E-mail 등

3. 통신사실 확인자료와의 비교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유사하나, 전자는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실에 관한 자료이고 후자는 통신서비스가입자의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라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이 해당되므로 위치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나, 위치정보 수집사실·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는 위치정보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6호 | 위치정보사업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치정보사업

- 1)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3)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집"이라 함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장치(GPS, 이동통신 단말기, 비콘(Beacon), RFID 태그 등) 또는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의 위치정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수집된 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다만,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직접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모두에 해당한다.
- 다.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 요구되므로,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회사 안에서 근태관리, 보안구역 감시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뿐 사업의 목적으로 수집·제공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
-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등이 근거 법령에 따라 행정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법상 행정작용에 해당할뿐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2. 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및 위치정보사업자 유형

〈 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및 위치정보사업자의 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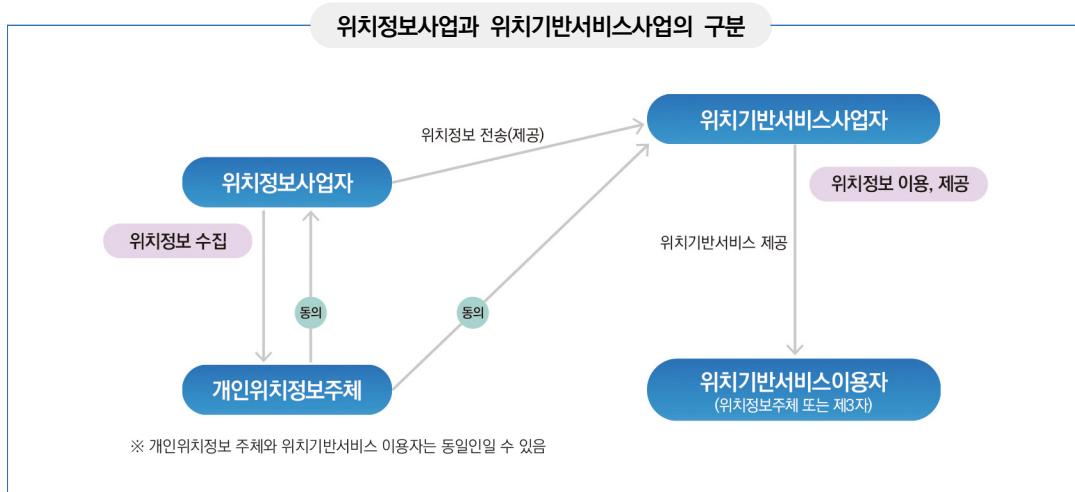
수집방식	내용	예상 사업자
Cell-ID(기지국)	• 통신기지국 정보를 수집	이동통신사업자
GPS	• GPS 장치를 차량·물류 등에 직접 부착, 위치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자사 위치정보센터로 전송받아 수집	보험사, 물류·경호업체, 텔레매틱스업체 등
자가 통신망 등	• 무선망, RFID, Beacon, Wi-Fi, 지자기 센서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	택시조합, 교통정보제공회사, 실내 내비게이션 사업자 등

〈 대표적 위치정보사업의 유형 〉

서비스유형	내용
차량 관제	• 카셰어링 차량에 GPS단말기를 부착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사 또는 타사의 주변 차량 위치 서비스 등을 위해 제공
	• GPS단말기를 부착하고 택시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사 또는 타사의 이용자 위치와 매칭한 인근 택시 배차 서비스를 위해 제공
	• 화물차량에 GPS단말기를 부착하고 현재 화물 배송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화물배송현황 안내 서비스를 위해 제공
	• GPS단말기를 부착하여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상 발생시 긴급출동, 급제동 등 운행 관리, 차량 주차위치 등 서비스를 위해 제공
광고, 마케팅 정보 알림	• 매장에 비콘을 설치하고 주변에 접근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광고, 마케팅 서비스 등을 위해 제공
실내 길안내	• GPS가 수신이 안되는 실내에서 비콘을 통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실내 길안내, 매장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위해 제공

3.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비교

- 위치정보사업은 통신망 및 위치측위서버와 같은 특정 설비를 통해 통신단말기의 기지국 정보나 신호, 거리 등을 측정·변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수집 또는 제작된 위치정보를 단순히 전송·전달받아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는 구분된다.



제7호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①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 ② 친구찾기, 물류, 경호, 관광안내, 차량관제 등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여야 한다.

- 수집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공유 모빌리티, 물류확인, 경호, 차량관제, 교통정보·관광·길찾기 안내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를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하는 것(자기 위치기반서비스)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를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하는 것(위치정보 제3자 제공서비스)이 있다.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공급받는 이용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다.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업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법인 내부에서 근로감독 또는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치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확인하는 경우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
-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등이 근거 법령에 따라 행정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법상 행정작용에 해당할뿐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유형

서비스유형	내용	예상 사업자
자기 위치 기반 서비스	pull 형	• 고객이 소지하는 스마트폰 단말기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주변 식당찾기, 친구찾기, 길안내 등의 앱 서비스 제공
		• 고객이 긴급호출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긴급출동하는 경호서비스 제공
		• 고객이 차량이상 발생 신고시 차량이나 소지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취득하여 긴급출동 등 서비스 제공
	push 형	• 고객이 카드결제시 결제가맹점 위치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고객 휴대폰 위치정보를 비교하여 불일치시 안내하는 카드분실·도용방지 서비스 제공
		•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이벤트정보, 할인권 등을 제공
위치정보 제3자 제공서비스	• 개인위치정보를 해당 개인이 하락하는 제3자에게 제공 (친구찾기, 채팅, 콜 택시, 대리운전 등)	이동통신사, 앱 사업자
기타	•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사 또는 개인차량 등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차량 최적배차, 주문연계 등 교통관제서비스를 시원이나 운전기사 등에게 제공	택시·버스조합 택배회사 등

3.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해당여부 예시

구분	위치정보 유무	사업 해당여부	동의 여부	예시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수집되는 정보	X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결제 시 부수적으로 입수되는 가맹점 장소에 대한 정보 ○ 놀이공원 출입 및 놀이기구 이용 시 부수적으로 입수된 정보 ○ 피트니스센터 내 출입 및 운동기구 이용 시 부수적으로 입수된 정보 ○ 직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획득한 출퇴근 기록 정보 ○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의 공동현관 출입·출차 관리를 위하여 획득한 정보 ○ 학생의 출결 관리를 위하여 획득한 등하교 기록 정보
위치정보 활용목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이나, 사업장 내부·행정 본연의 업무 등으로만 활용하여 사업과 무관한 경우	○	X	○ [위치정보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내 영·유아 이탈 방지 등을 위하여 획득한 소재 정보 ○ 요양시설 입소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하여 획득한 소재 정보 ○ 청소차량 등 공무차량의 관제를 위하여 입수한 정보 ○ 안전한 해양교통을 위한 선박관제 정보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 등 사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위치정보사업자로서 등록,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신고 필요]	○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이용약관을 통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에게 할인정보, 쿠폰 등 컨텐츠 정보 제공 서비스를 목적으로 획득한 카드 결제 시 가맹점 장소에 대한 정보 ○ 놀이공원 내 미야찾기, 일행찾기 등 실내 위치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출입기록 및 놀이기구 소재 정보 ○ 회원별 맞춤형 운동센터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입수한 출입기록 및 운동기구 소재 정보 ○ 사용자에게 근태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출퇴근 기록 정보 ○ 부모 등에게 영·유아 이탈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소재 정보 ○ 부모 등에게 학생 출결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등하교 기록 정보 ○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자 등에게 공동현관 출입·출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정보 ○ 보호자 등에게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획득한 소재 정보

제8호 | 위치정보시스템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1. 위치정보시스템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나.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

- 각종 컴퓨터, 위치정보 및 관련 개인정보가 기록된 DB, 관제서버, 위치정보 수집단말기, 저장·기록 장치, 위치정보시스템 관리자 등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 예 : 휴대전화 단말기, wi-fi 위치 DB, 위치측위서버 등이 결합된 것이 위치정보시스템이다.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24.〉](#)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규정취지

-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하여 정부가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모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조문해설

- 이 조항은 정부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된 기술개발, 위치정보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품질개선,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활용제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한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동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14세 미만의 아동은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2018년)되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6. 9. >

1. 규정취지

- 위치정보법의 법체계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위치정보법과 다른 법률과의 상충관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2. 위치정보법의 성격

-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수집·저장·보호·이용 등에 관하여는 위치정보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예외가 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법률에서 위치정보법이 정한 위치정보의 활용요건이나 기준과는 다른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및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규정한 반면, 위치정보법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보호법의 대상·보호수준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위치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에도 해당되므로,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관계 〉

구 분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수법주체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정보사업자등
보호대상	공공/민간, 영리/비영리,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일반	개인위치정보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상호 관계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적 성격	위치정보에 대한 일반법이나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적 성격

※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이관 통일되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규정에 따름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등

제5조의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의2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

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5조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록·변경등록의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0. 19.]

1. 규정취지

-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개인위치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제공하기 때문에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설비·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허가제

를 두고 있었는데, 이는 신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22. 4. 20. 시행되는 개정안은 기존의 엄격한 ‘허가제’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제’로 완화하였다. 동시에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2. 등록신청

-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설립 중인 법인)는 아래와 같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필요 요건	결격 사유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들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위치법 제26조제1항 각 호 참조	1.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법 제6조제1항)가 없을 것 2.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위와 같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법인 대표자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주 등 대표자 명의로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조제2항】

참고 등록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시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법인요건, 사업개요, 시스템의 구성(물적설비),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등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3. 등록심사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5호) 〉

1. 재무구조의 건전성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3.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 방송통신위원회(자문위원회)는 위 심사사항을 평가하여 각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마다 적합/부적합을 판정한다

4. 등록결정 및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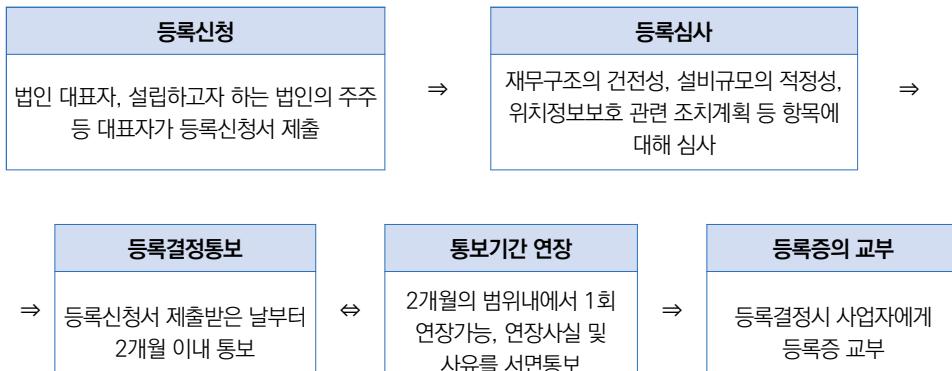
가. 등록결정기간 및 기간연장【시행령 제2조제5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등록증의 교부【시행령 제4조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이 결정된 경우, 관련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세부 등록신청요령 및 절차



5. 변경등록

-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이 때,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는 위치정보사업자가 등록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주요설비를 의미한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 신청방법【시행령 제5조제2항】**
 -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등록조건의 부여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등록조건을 붙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와 같은 등록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등록조건의 예
 - 위치정보의 정확도 및 수집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제반 기술개발
 - 위치정보 측위기술 등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 등록 이후 3개년간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제출

7. 등록 및 변경등록 네거티브 규제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에 있어 등록 심사 기준에 미달, 결격사유 해당하는 등의 경우만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8.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제1호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1호

제5조의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0. 19.〉](#)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0. 19.〉](#)

[본조신설 2018. 4. 17.]

1. 규정취지

- 택배 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과 같은 진입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18년 4월 17일 개정을 통해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2.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 사물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사항【법 제5조의2제1항】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고시 구비서류【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시행규정 별지 제1호의2】

1. 사업자 협회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1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o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 「위치정보의 관리지침」작성 등 증빙서류
 - o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 시스템접근권한 식별, 운용중인 보안 장비, 암호화 솔루션 등 증빙서류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5.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신고의 제한

- 부적격사업자의 진입에 따른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물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치정보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고의 의제

-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변경 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사물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① 상호,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은 서버 등 주요설비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 변경신고 방법

- 「사물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시행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신고시 구비서류【시행령 제5조의2제1항】

1. 변경 사업계획서(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1부.
2. 그 밖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4.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1호의2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1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3항 제1호

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15. 2. 3., 2015. 12. 1., 2018. 4. 17., 2020. 6. 9., 2020. 12. 8., 2021. 10. 19.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고, 접근권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접근권한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5. 12. 1., 2020. 6. 9. >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또는 접근권한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업원이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 2020. 6. 9. >

[제목개정 2015. 12. 1.]

1. 규정취지

- 위치정보의 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안대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사물위치정보사업자 내부의 인적 관리도 역시 중요하다.

-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될 수 없는 자(결격사유)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위치정보사업자와 그 구성원의 도덕적 자질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임원 및 종업원의 결격사유

가.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될 수 없는 자

-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은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복권되지 아니한 파산자는 채무관계에서 신용을 잃은 자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고 위치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분야 관련 법률인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을 중대히 위반한 경우를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임원 또는 종업원이 될 수 없는 자의 예

- (예1)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을 일시 휴지하면서 3개월 후 사업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별다른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예2)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심사시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등록을 받은 사실이 밝각되어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임원 및 종업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당연히 퇴직하여야 하며, 위치정보 접근권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접근권한자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또는 접근권한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업원이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4. 17.〉](#)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1.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⑥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5. 2. 3., 2018. 4. 17.〉](#)

⑦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2018. 4. 17.〉](#)

1. 규정취지

- 개인위치정보사업은 개인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개인위치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설비,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는 한편,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진입규제를 회피하게 될 우려가 있고, 위치정보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권한이 승계되어 위치정보의 유·노출 또는 오용·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부적격 사업자를 배제하여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정성·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합병·분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1. 인가신청

-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신청방법**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합병·분할시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합병·분할인가신청서)」(“시행규정” 별지 제4호 서식)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인가신청시 구비서류(시행령 제6조, “시행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양도·양수 인가신청시	합병·분할 인가신청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2. 인가심사기준 및 절차

- 방송통신위원회는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다음 항목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및 별표2의3]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 제 2022-6호)³⁾ 〉

- | |
|---|
|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300점) |
|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550점) |
|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150점) |

- 자문위원은 각 세부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을 획득한 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 인가결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의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인가신청법인에 통보한다.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8조]

※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5조]

1. 인가심사는 인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3. 사업 양수, 합병·분할 인가의 효과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합병·분할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양수인 및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분할 전 법인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사업 양수, 합병·분할 인가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합병·분할 인가에 있어 심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 해당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인가하고 있다.

5.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1항제2호

3) 이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이라 한다.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1. 신고

-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서」(“시행규정”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고시 구비서류(시행령 제6조의3, “시행규정” 별지 제4호의2 서식) 〉

양수신고시	상속신고시	합병·분할신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2. 신고의 효과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합병·분할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양수인, 상속인 및 합병·분할 후의 법인은 양도인 및 피상속인, 합병·분할 전 법인의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3.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1호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
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1. 규정 취지

- 위치정보는 긴급구조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또한 위치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도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
 - 이러한 취지에서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할 것과 관련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1.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에 대한 승인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 신청방법** : 「개인위치정보사업 전부 또는 일부 휴업·폐업승인신청서」(“시행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 휴·폐업 승인 신청시 구비서류【시행령 제7조, “시행규정” 제4조】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 계획을 기재한 서류
3.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증명서류

2. 휴업기간의 제한

- 위치정보는 긴급구조 등 공익목적 뿐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휴업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은 사업의 휴업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휴업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치정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

- 위치정보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될 경우, 예기치 못한 서비스 중단으로 서비스 이용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업 휴업·폐업 30일 전까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는 개별통지와 전체 공지를 병행하여야 한다.

※ 통보방법【시행령 제7조제2항】

1. 서면,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4. 휴업·폐업 승인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고 있다.

5.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시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위험성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 파기 방식

-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

● 파기대상 정보

- 사업 휴업시 : 휴업과 동시에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한다. 단, 일부 휴업시에는 휴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한다.
- 사업 폐업시 : 폐업과 동시에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한다. 단, 일부 폐업시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한다.

6.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2호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1항제3호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1.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폐업신고서」(“시행규정”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 휴·폐업 신고시 구비서류【시행령 제8조, “시행규정” 별지 제5호의2 서식】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2.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증빙서류

2. 휴업기간의 제한

- 위치정보는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휴업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은 사업의 휴업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휴업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치정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폐지를 명할 수 있다.

3. 휴업·폐업 신고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 방송통신위원회는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위치정보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2호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5. 2. 3., 2018. 4. 17.〉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4. 17., 2021. 10. 1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1. 규정취지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개인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한 일정수준의 규율체계가 필요하지만,
 - 개인위치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과는 달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인위치정보사업과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진입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 이러한 취지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한하여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므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시행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 사항【법 제9조제1항】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 신고시 구비서류【시행령 제9조제1항, “시행규정” 별지 제6호서식】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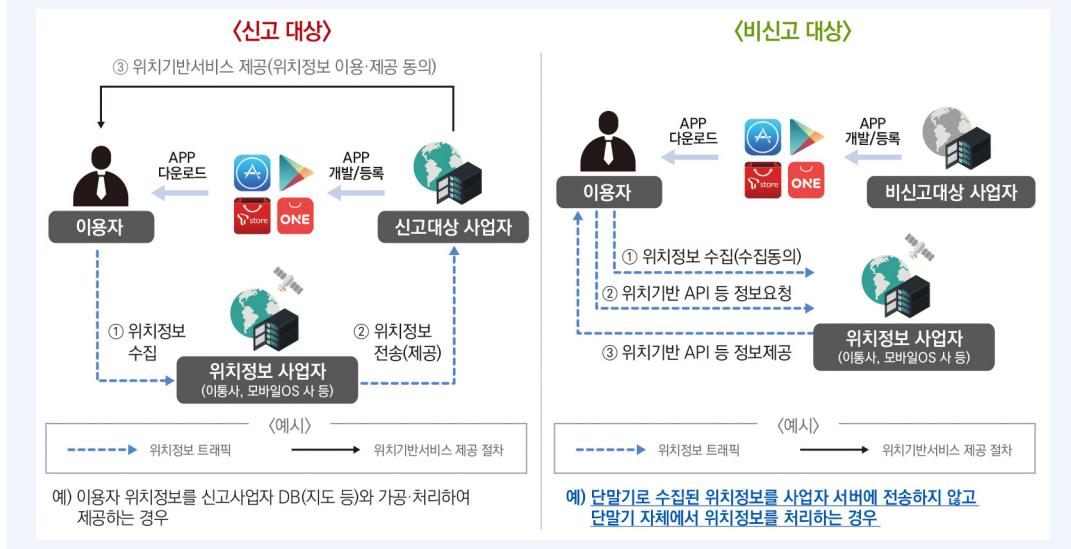
- 1)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개인과의 연관성이 없어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현저히 낮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1.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지역의 현재 일기예보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 시 이메일, 전화번호 및 스마트폰의 고유식별 값 등과 같은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정보는 없이 임의의 색인(index)값을 부여하여 이용자를 구분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개인(차량 운전자의 정보)과 연관되는 정보 없이 차량의 위치정보만을 가지고 버스운행정보 등의 서비스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2)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의 단말기(스마트폰, GPS 단말기 등)에서만 활용할 뿐, 사업자의 위치정보 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시 위치정보사업 신고 vs 비신고 대상



● 신고의 제한

- 부적격사업자의 진입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치정보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신고의 의제

-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예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

A사업자가 테마파크 입장객들의 팔찌(비콘 내장)를 통해 실내 이용자 위치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인접한 놀이기구의 종류, 대기시간 등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하고 미아방지를 위해 개인전화번호 등을 식별하여 일행의 위치를 공유하는 등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면, A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므로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 위치정보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소상공인등”(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고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를 포함)이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시 구비서류[시행령 제10조제4항, 시행규정 별지 제6호서식]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6.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 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① 상호,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용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 한다)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방법

-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시행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신고시 구비서류[시행령 제9조제2항, 시행규정 별지 제6호 서식]

1.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가 변경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제9조의2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및 내용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1. 규정취지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 스타트업 또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사업 경쟁력 및 수익성 등이 불투명하여 시범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후 1개월간 신고를 유예하도록 하였다.

2.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영위

● 신고의 유예

- “소상공인등”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후 1개월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가 유예되지만,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2.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3.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다음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나.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참고 1인 창조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1.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창의성 :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
 - 전문성 :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
 2. 부동산업, 임대업, 광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종이 아닐 것
-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 유예기간 후의 신고

- “소상공인등”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사항【법 제9조의2제1항】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종류 및 내용

● 신고의 방법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소상공인등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신고시 구비서류[시행령 제10조제1항, 시행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1.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2.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3.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신고의 의제

-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때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의 제한

- 부적격사업자의 진입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치정보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변경 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소상공인등”은 신고한 사항 중 ① 상호,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시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방법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시행규정” 별지 제6호의2 서식)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변경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5.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신고 의무

-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고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도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고시 구비서류[시행령 제10조제3항]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계속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소상공인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2호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4. 17.>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8. 4. 17.>

1. 규정취지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 양도·양수, 상속, 합병·분할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변동이 있으므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을 위한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사업 양수, 상속, 분할·합병 신고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방법
 - 양도·양수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시행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시행령 제11조제1항, 시행규정 제8호서식】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사업계획서(변경되는 부분에 한함)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상속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시행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시행령 제11조제2항, 시행규정 제8호서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o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 : 가족관계 증명서, 공증문서, 상속 협의서(상속자를 제외한 가족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상속을 포기한 서류), 법원 판결문 등

- 합병·분할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분할신고서」(“시행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시행령 제11조제3항, 시행규정 제8호서식】

1.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 o 합병·분할 시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 때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진행하기 위한 합병·분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1부(변경되는 부분에 한함)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3. 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의 효과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및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신고함으로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4.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o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상속,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o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상속, 합병·분할의 신고를 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1호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18. 4. 17.〉](#)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4.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8. 4. 17., 2020. 6. 9.〉](#)

[제목개정 2018. 4. 17.]

1. 규정취지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후 관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 일정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
 - 다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사업과는 달리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사업 진입시 신고제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진입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퇴출이 가능하도록 휴업·폐업에 대해서도 신고토록 규정한다.

2. 사업 휴·폐업의 신고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폐업 신고서」(“시행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 구비서류【시행령 제12조제1항, 시행규정 별지 제9호 서식】

1. 일부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기간 및 휴업·폐업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시기, 통보 사항 및 방법은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의 경우와 같다.
 - 통보시기 및 휴업 가능 기간
 - 통보시기 : 사업 휴업·폐업 30일 전
 - 휴업기간 : 1년 이내
 - 통보사항 및 통보방법【시행령 제12조제2항, 제8조제2항】
 - 통보사항 : ①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범위
② 휴업 또는 폐업의 일자(휴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재개일시 포함)
 - 통보방법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통지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병행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휴업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치정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사업폐지를 명할 수 있다.

3. 개인위치정보 등 파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시에는 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가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오·남용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기해야 한다.

● 파기 방식

-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

● 파기대상 정보

- 사업 휴업시 : 휴업과 동시에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한다. 단, 일부 휴업시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한다.
- 사업 폐업시 : 폐업과 동시에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한다. 단, 일부 폐업시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한다.

4.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폐업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2호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2호

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1. 규정취지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된 계약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포함되어 있거나 전문적인 정보통신용어가 사용되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이용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사업자·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가 유예된 소상공인 등을 포함)의 이용약관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 이용약관의 개념 및 변경 명령

- “이용약관”이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이용약관에는 사업자의 상호 및 연락처,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의 이용요금,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또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기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과 관련된 조건, 위치정보관리책임자(임원 이상)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에 관한 내용, 위치정보법상의 손해배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부수하여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고, 기간통신역무 이용약관에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공개할 수 있다.
- 단, 위치정보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따라서, 위치기반서비스가 기존 기간통신역무와 관계하여 필수적인지 아니면 별도 부가적 서비스로서 선택적인 동의가 필요한지에 따라 약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포함시켜 만들어도 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용약관의 공개 의무 및 공개방식

-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이용약관을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이용약관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자	공개 방식
위치정보사업자	o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o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4. 이용약관 변경명령

- **이용약관 변경명령** : 약관내용이 개인위치정보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참고 “개인위치정보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에 추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 제공에 대하여 과도한 이용료를 산정한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한 경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는 불특정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경우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열람·정정요구권과 같은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우 등

5.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 이유 및 변경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3호, 제3호의2
○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등록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1의2. 제5조제5항에 따라 부가된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 나.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 다.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4.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4의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5. ~ 8. 삭제 [〈2021. 10. 1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목개정 2021. 10. 19.]

1. 규정취지

-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보장,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위치정보법의 주요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정지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후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 행정처분의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명령,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이러한 행정처분은 법위반 사업자를 사업 부문에서 퇴출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형별이나 행정별과 같은 별차규정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형별, 과태료 등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주체, 이용자 및 일반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령 제14조제1항】

-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적용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령 별표3)】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개별기준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이거나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인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를 할 수 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가. 가중 사유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위반행위	사업자 구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인가를 받거나 법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인가)취소	-	-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사업폐지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업폐지	-	-
1의2.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가된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때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2.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때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승인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 다. 법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
4.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또는 등록취소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
5.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6개월 이내 또는 등록취소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6개월 이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6개월 이내		

-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중 제5호(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는, 사업 자체의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가부를 불문하고 사업 자체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4.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사업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3호
○ 사업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3호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기록·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21. 10. 19]

1. 규정취지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위험이 있다(법 제14조제1항). 또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위치정보가 활용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사업은 계속 영위하되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사업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필요하다(법 제14조제2항).

2. 일반적인 과징금 부과대상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14조제1항]

1.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3.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4.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3. 정지명령에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대상

- 정지명령에 대신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이므로,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사업의 정지로 긴급구조 등 공익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이 크게 제한되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재산상 이익이나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손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과징금 부과 기준인 매출액을 추정하는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란** ①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 위반기간 또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15조제5항】

5. 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은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또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라 함은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을 의미한다.【시행령 제15조제1항】

※ 단,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해당 사업연도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위반행위 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이라 함은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의미한다.【시행령 제15조제2항】

※ 단,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과징금 산정시 참작사유【법 제14조제4항】

-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②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③ 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참작하여, 시행령 별표 4(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시행령 별표4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다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라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2)에 따라 산출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3)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서비스 제공 방식

나) 서비스 가입 방법

다)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범위

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3) 부과기준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	1천분의 15

4) 1)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	2억원

5) 3)의 표 및 4)의 표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고의·증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위치정보 관련 피해규모, 위치정보의 공중(公衆)에 대한 노출 여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필수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라. 추가적 가중·감경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은 사업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사업정지 기간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으로 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세부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법 제14조제6항, 제7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도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IV

위치정보의 보호

-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 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 제17조의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 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 제21조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제22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 제2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
-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1. 규정취지

- 위치정보법 제15조의 수범대상은 “누구든지”이다. 따라서 동 조문은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도 위치정보의 수집 등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위치정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동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가장 큰 기본원칙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인격권 및 재산권에 관련된 정보(사익성)이자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공익성)에 해당되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항 |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 동의의 원칙

-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 시 개인의 사생활권 또는 재산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 시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즉,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에는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만, 위치정보법 제29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 시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수사목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예외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 한편,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시에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2. 동의주체

가. “개인”

- 위치정보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주체는 “개인”이다. 이때, “개인”이란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되는 자이므로, 위치정보법 제2조에서 정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한다.

나. 물건의 위치정보가 개인위치정보가 되는 경우

- 물건의 위치정보는 물건의 관리, 도난·분실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이 위치정보가 추적되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물건과 함께 이동함으로써 물건의 위치정보가 개인의 위치정보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이를 개인의 위치정보로 보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위치정보의 추적 목적, 물건의 재산적 가치, 특정인의 물건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판단 기준]

1. 이동성 있는 물건이 해당 물건 소지자의 이동과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
※ 물건의 실사용자가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물건 소지자가 항상 소지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
2. 이동성 있는 물건에 부착된 **위치수집장치의 목적**이 물건의 위치 확인인지 물건 소지자인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인지 여부 등

참고 물건 위치정보가 개인위치정보가 되는 예

- (예1) 위치정보수집장치가 부착된 미술품을 운반하는 자가용 운전자를 개인위치정보주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택시에 위치정보수집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개인위치정보주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예2)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이를 찾고자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나, 애인의 현재 위치를 알고자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위치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동의 방법 및 형식

- 동의 방법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나 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나, 동의 표시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법 제2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동의 형식**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은 위치정보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며 각각의 사항에 따라서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서비스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별도의 선택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항 | 기망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금지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

1. 정보통신기기 복제 등 개인위치정보 수집 금지

- 정보통신기기의 복제, 타인 정보의 도용 등과 같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개인위치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가. “정보통신기기의 복제”

- 이동통신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여 똑같은 단말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여 이를 통해 타인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타인의 정보 도용”

- 본인임을 가장하면서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이동통신기지국정보가 포함된 타인의 통화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정보통신기기의 복제 또는 타인정보 도용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기망하여 타인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방법이든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참고 기망행위의 예시

(예) 주민등록번호 및 단말기 일련번호, ESN(Electronic Serial Number) 3가지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여 “친구찾기서비스” 등 원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

제3항 | 위치정보수집장치 부착사실의 고지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사실 고지

-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에게 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사실을 고지도록 함으로써, 비밀리에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위치정보법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판매·대여·양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판매”란 물건을 대금을 지급받고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대여”란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건을 타인의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양도”란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통하여 그 물건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지방법

-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구매하거나 대여·양수받은 자가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부착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예컨대, 자동차를 임대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서 자동차의 인도시에 구두로 설명하는 행위 또는 이용약관에 기재하고서 동의받은 후 별도의 통지를 통하여 확인받는 행위처럼 약관에 대한 동의 이외에 위치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4호
○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위치정보사업자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5호
○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물건 판매·대여·양도 시 부착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4호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1. 규정취지

-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며, 또한 관련조치의 준수 여부를 공무원이 점검하도록 하여 위치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등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하 ‘보호조치 기준’이라 함)」을 제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였다.

가. 관리적 조치【시행령 제20조제1항, 보호조치 기준 제3조~제7조】

-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운

영한다.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며,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수립·이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 각 취급단계별로 작업책임자와 작업 담당직원 수 및 그들의 권한을 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위치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각 취급단계별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계별 접근권한 지정은 위치정보의 취급자를 한정하여 권한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의 위치정보 취급단계별 책임자와 담당직원이 반드시 비동일인일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위치정보 처리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올바른 처리방법 등을 규정한 내부 방침이나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이 이를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취급·관리 지침에는 직원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출입 및 장비접근통제, 침입방지, 문서관리, 위치정보 관리·보호계획, 위치정보 관리·보호조직, 위치정보 관리·보호 교육 및 훈련, 침해사고대응(계획·조직·인력·가상시나리오·모니터링시스템), 점검 및 감사, 비상계획, 시스템 정책관리, 계정·비밀번호관리, 시스템접근통제, 백업관리, 로그관리, 패치관리, 바이러스관리, 보안설정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 취급대장의 형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자료의 파기시까지 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취급대장 담당자의 지정과 정기적인 백업 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검사의 실시** : 위치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최소 연 1회의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재평가하고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기술적 조치【시행령 제20조제2항, 보호조치 기준 제8조~제13조】

-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단말기를 암호키나 비밀번호를 통해 접근을 제한하거나 개별 직원의 고유 아이디나 생체 인증 등에 의해 담당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동일 또는 유사 비밀번호의 재이용 제한, 최저 비밀번호 문자수의 설정 및 제한,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시 아이디 정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방화벽 설치 또는 라우터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기록·보존장치의 운영** :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접속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자동기록·보존되도록 하여 저장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침입 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 시스템은 상업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공개소프트웨어로서 기술적으로 인정된 시스템도 사용가능하다.

-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한 알고리듬을 통한 암호화 등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송·수신 시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 설치,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의 제공 조치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등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자동 기록·보존 의무

- 위치정보법은 수작업에 의한 유출이나 오류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의 수집일시, 수집방법, 수집목적(요청내용), 제공일시 및 내역, 이용목적 등을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 기록·보관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자동 기록·보관된 자료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때, 자동 기록·보존해야 하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법 제2조제4호, 제5호】

4. 위치정보 보호조치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들이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적절히 취하고 있는지 여부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등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행할 수 있다.
- 점검절차【시행령 제21조】
 - 관리적·기술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① 점검의 근거 및 목적, ② 점검 일시, ③ 점검자의 인적사항, ④ 점검 내용을 점검 7일 전까지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히 개정 위치정보법(22.4.20. 시행)은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시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통보시기를 점검 3일전에서 점검 7일전까지로 확대하여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였다.
 - 다만, 개인위치정보 침해사고가 이미 발생하거나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점검절차상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5.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4호 제4호의 2

6. 유사 입법례

(1) OECD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 동 지침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9개 기본원칙(책임의 원칙, 주지의 원칙, 윤리의 원칙, 분야별 협력의 원칙, 비례의 원칙, 통합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재평가의 원칙 및 민주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이 중 “책임원칙”은 정보시스템 소유자, 제공자 및 이용자,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에 관련된 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EU 「전자통신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2002/58/EC)」

- 동 지침 제4조는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의 안정적인 보안을 위하여 기술적·조직적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안전관리조치)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그 취급하는 개인 데이터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기타 개인 데이터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11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관리, 반출수단제한, 외부로부터의 부정한 접속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안전관리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45조제2항,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각 법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개인정보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접근통제시스템의 설치·운영, 중요정보의 암호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6. 9.>

1. 규정취지

- 위치정보 침해는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및 그 종업원에 의해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직원은 위치정보를 취급하면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은 사업자와 함께 종업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도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의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2. 의무대상자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및 이들의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반드시 위치정보 처리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처리업무를 수행한 자에 한정하지 않으며, 직무상 위치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종업원이었던 자”도 의무대상자이므로 종업원이었던자가 근무할 당시에 알게 된 위치정보를 퇴사 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도 법위반에 해당된다.

3.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를 금지하므로,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거나 공공연히 외부로 알리는 행위 또는 위치정보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거나 일시 등을 조작하여 다르게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4.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제2호

5. 유사 입법례

(1) EU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2/58/EC)」

- 제9조 : “처리자 자신을 포함하여, 관리자와 처리자의 지휘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속하는 자는 관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안 된다. 다만, 법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독일 「연방정보보호법(BDSG)」

- 제5조 :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고용된 자는 승인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사용할 수 없다. 사적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약서는 활동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3) 한국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③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1. 규정취지

-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14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항이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14세 미만의 아동 등을 비롯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유사입법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규제법 제3조제1항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화장품법」 제12조

- 화장품법 제12조는 화장품 포장에 하는 법정사항의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의료기기법」 제23조

- 의료기기법 제2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법정사항을 기재할 때, 다른 문자·기사·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어야 하고,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도록 하고 있다.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규정취지

-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관계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원칙을 규정한 제15조와 구분된다.
 - 이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임의적인 개인위치정보 수집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통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2. 개인위치정보 수집시 이용약관 명시 및 동의

-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중요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이용약관에 명시

- “이용약관”이란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의 요금 및 조건 등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용약관 명시사항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6.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시행령 제22조】

나. 동의획득 방법

-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동의에 한정되지 않으며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사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지므로, 되도록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과 같이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쉬운 수단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이용약관 명시사항을 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예 :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동의). 다만, 통신서비스이용약관 등에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사항을 포괄할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면에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치정보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와의 접촉점이 없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앱, 서면동의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통해 제18조제1항의 각 호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다. 동의주체

- 계약체결자(개인)와 실사용자(개인)가 다른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는 자신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와 위치정보 수집단말장치(휴대전화 등)의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거나 주의를 다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 및 실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자인 명의자를 개인위치정보주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계약체결자(법인 또는 단체)와 실사용자(개인)가 다른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와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실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게 실제 사용자인 개인위치정보주체를 특정하여 지정할 것을 요청하거나,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서와 위치정보사업자가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일부 동의유보 허용

-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일부 동의유보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범위가 다양할 경우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사업자가 항목별로 나누어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경우에도 수집범위 등에 대하여 나누어 동의할 수 있다.

4. 필요 최소한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원칙

- 개인위치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저장하고 있으면 해킹 등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처리자에 의해 오·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정보사업자는 수집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위치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고 그 이상의 개인위치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5.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정을 알고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제3호
○ 이용약관 명시의무를 위반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5호
○ 필요최소한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무를 위반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6호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1. 규정취지

-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전송되어 이용·제공되므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수집 시 동의 받은 것과는 별도로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 또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 이용하는 것보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바, 위치정보법은 이를 위해 사전 고지 및 동의와 사후 통보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개인위치정보 이용시 동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용약관 명시사항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통보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3조】

- 동의방법 및 동의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는 경우와 같으며, 이용약관 명시사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3.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가. 사전 고지 및 동의획득 의무

- “친구찾기 서비스”와 같이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때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보다 강화된 고지 및 동의획득 의무가 부여된다. 즉, 개인위치정보 이용시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할 위의 6가지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및 제공목적을 추가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고지”라 함은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실제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므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인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와 제공목적이 이미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예 : 이용약관에 명시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및 제공목적에 대하여 구두로 내용을 설명하거나 명시된 부분의 위치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 등

- 동의형식은 이용약관 명시와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를 함께하고 단일한 동의를 받아도 되고, 이용약관을 명시하고 개인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별도로 제3자에 대한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나. 사후 통보의무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의무가 부과되고, 사후적으로는 통보의무가 부과된다. 즉,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회 또는 모아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

은 제3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시 원칙은 매회 즉시통보이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횟수와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참고 모아서 통보 기준【시행령 제24조 제4항】

가. 횟수 : 10회, 20회 또는 30회 등 10배수의 횟수

나. 기간 : 10일, 20일 또는 30일

※ 모아서 통보 시 최초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0일이 될 때마다 모아서 통보한 후 남은 정보제공내역 및 동의한 횟수에 이르지 않아 통보하지 않은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여야 한다.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 통보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즉시 통보받는 방법과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 중 선택하여 통보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3자 제공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또는 기간

②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모아서 통보하는 방법에서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요청 방법

- 8세 이하 아동,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등록을 한 중증정신장애인의 보호의무자에게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호의무자를 개인위치정보주체로 보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통보의 수단

- (원칙)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로 통보(SMS문자, 앱 알림 등) 해야 한다.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4.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정을 알고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제3호
○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한 이용약관 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5호
○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7호

5.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비교

-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시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업자 정보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수집 목적 (서비스 내용)	•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 기반서비스의 내용
정보 주체의 권리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수집 방법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보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 기간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시 통보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지정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

1. 규정취지

-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거절하지 아니하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다.
-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반드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진다.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치정보 요청 방법(시행령 제25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의 이용·제공 목적의 달성(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 ②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을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이러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위치정

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가 표시된 이용계약서 사본 등을 증거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3.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의무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이 때 “정당한 사유”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치정보시스템의 부족 또는 기술적 문제,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지나치게 낮은 대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4.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위치정보사업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1항제4호

5. 유사입법례

-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하였거나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 기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2. 3. >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1. 규정취지

- 개인위치정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나, 위치정보법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동의원칙과 최소한의 예외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금지

-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① 개인위치정보와 ②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외** :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것이 요구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극히 적으면서도 사회적 효용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 가.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정당한 이익보호를 위해 서비스제공 계약의 필수요소인 요금정산을 위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요금정산”을 위해서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개인위치정보 자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미리 예상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없는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제4호

4. 유사 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④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⑥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제21조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0. 19.]

1. 규정취지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사항을 언제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포함한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인식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였다.

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사항 [법 제21조의2, 시행령 제25조의2]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사항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8.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7호의2

제22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규정취지

-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신고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양도·합병·상속 등에 의해 제3의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해당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영업 양수자 등 지위를 승계받은자의 통지의무

- 사업 양도·합병·상속 등에 의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자,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하는 법인, 상속받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사항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30일의 기산점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영업 양도 등의 통지방법

- 지위를 승계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6조제1항】
 - 다만, 양도 등으로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자의 과실 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시행령 제26조제2항】
※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양도나 합병과정에서 고객의 정보를 정상적으로 이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양도나 합병 등의 과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전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사업양도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8호

5. 유사 입법례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미리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영업양수자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또한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전사실을 이미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제2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10. 19.>

②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0. 19.>

1. 규정취지

-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개인위치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목적을 달성한 후 즉시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그러나 어떠한 예외사유도 없는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는 오히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위치정보법은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예외적 보유를 허용함으로써 종전 입법을 개선·보완하였다.

2. 개인위치정보 목적달성 시 즉시 파기의 원칙

-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도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이용·제공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즉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가. “즉시 파기” 란

-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목적달성을 인식하고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 내에 파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파기하여야 할 정보

- 위치정보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목적이 달성된 모든 개인위치정보가 파기대상이다.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명시한 보유기간이 지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 예외적 보유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때부터 최대 1년까지로 한다.【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3. 개인위치정보 파기 방법

-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위치정보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소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드디스크 등의 매체에 전자기적으로 기록된 개인위치정보는 다시 재생시킬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매체를 파괴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 인쇄물 등 파쇄가 가능한 형태인 경우에는 분쇄기 등을 이용하여 재조합이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4. 파기실태점검의 방법 및 절차

-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점검의 근거 및 목적, 점검 일시, 점검자의 인적사항, 점검 내용을 점검 7일 전까지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한다.【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1조】

5.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의2
○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8의2

6. 유사입법례

- 개인정보보호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 개인정보법 제21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5조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7조 개인위치정보주체 손해배상

제28조 분쟁의 조정 등

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2. 3.〉](#)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1. 규정취지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 이를 위해 위치정보법은 동의 철회권,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일시중지 요구권, 자료의 열람 및 고지 요구권, 오류 정정 요구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 동의철회권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철회의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에 의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철회가 가능하다.

● 위치정보의 파기의무

-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만약 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동의를 철회한 해당 부분의 자료를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3. 일시중지 요구권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일시 중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일시중지 요청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4. 열람·고지 및 정정요구권

- 열람·고지 및 정정요구의 범위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①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와 ② 개인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하거나 고지받은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열람·고지 및 정정요구의 거절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는 열람·정정요구를 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인이 정당한 권한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나치게 과도하고 반복적으로 열람요구를 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5.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 요구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7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철회, 일시중지요구, 열람·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는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6.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일시적인 이용 중지요구를 거절하거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1항제5호
○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8의3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이유 및 내용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9호

7. 유사 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 및 제39조의7에서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권, 동의철회권 등을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제25조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② 제18조제2항·제19조제5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규정취지

- 14세 미만 아동은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명시하여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보장

- 14세 미만의 아동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이들이 행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이 행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대면, 전화통화, 우편(팩스), 전자서명이 수반된 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다만, 진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시행령 제26조의2】

※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

- 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위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유보권 또는 철회권 보장

-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동의권 및 동의유보권,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철회권 및 일시적 중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8세 초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10호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11., 2014. 10. 15., 2015. 2. 3.〉](#)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4. 11., 2011. 3. 30., 2014. 10. 15., 2015. 2. 3., 2016. 5. 29., 2018. 4. 17., 2020. 6. 9.〉](#)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④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 [〈개정 2020. 6. 9.〉](#)

1. 규정취지

-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및 장애인 등록을 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심신의 능력이 미약하여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위치정보는 이를 위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이에 따라 동 조문은 8세 이하 아동이나 중증장애인이 실종된 경우와 같이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보호대상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3.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권자

- 8세 이하 아동의 경우 : ① 법정대리인, ②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⁴⁾
-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 장애인등록을 한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 : ① 법정대리인, ②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1호)의 장, ③ 정신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장 ④ 정신재활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장
※ 다만,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함

4. 동의방법

-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 등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이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 임을 증명하는 서면(보호의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1항】
- 이때 서면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동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및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참고 서면동의서 기재사항【시행령 제27조제2항】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후견인)에 따르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②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후견인을 자정한다.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제27조 개인위치정보주체 손해배상

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규정취지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무단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 피해를 준 경우로서 고의·과실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위치정보가 누설·변조·훼손됨에 따라 피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과실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가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로서,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관리·감독상 무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가 유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무단 수집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과실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등

3. 유사 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정보2주체의 손해배상청구시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례 대법원(2014다56652 판결)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28조 분쟁의 조정 등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② 위치정보사업자들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규정취지

-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2. 사업자간 분쟁의 재정

-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예 : 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한 요금분쟁, 부정확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따른 책임 등

3.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의 조정

-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 예 :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VI

긴급구조 등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0조의2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제31조 비용의 감면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개정 2018. 4. 17.〉](#)
-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19.〉](#)
-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

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로 한정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설 2015.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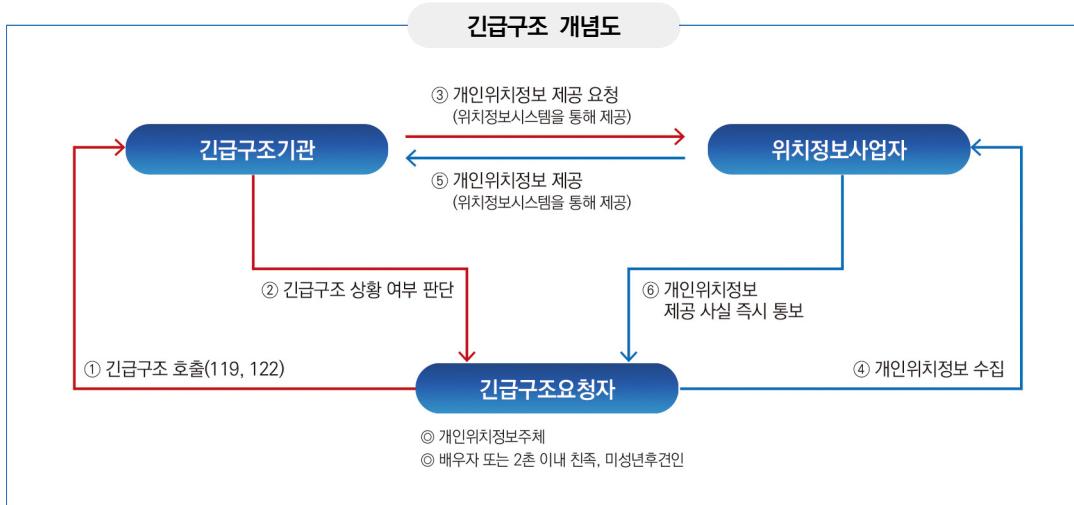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5. 14.]

1. 규정취지

- 개인위치정보는 급박한 위험에 직면한 인명을 구조하거나 경보를 발송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이다.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경찰관서 및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적시에 구조가 이루어지는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와 제공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2.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행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호】
- “긴급구조의 요청자”로는 ① 개인위치정보주체 본인과 ②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만을 의미한다.
 - 이때,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긴급구조 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119 및 122번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를 말한다. 특수전화번호인 119 또는 122를 통한 긴급구조 호출에 의해 직접적인 구조활동이 가능한 긴급구조기관은 탐색구조부대, 대한적십자사, 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긴급구조지원기관과는 구분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참조】
 -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 측위 방식에 의해 수집하게 되는 개인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긴급구조기관의 권한** :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긴급구조가 필요한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긴급구조를 요청한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③ 기타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긴급구조 요청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 **긴급구조기관의 의무** :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②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호출에 따른 요청시 위치정보 제공의무를 가진다. 이 경우 통신망의 종류나 음성호출 여부와 관련 없이 긴급구조 호출이 이루어진 통신망이나 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위치정보사업자가 그 대상이 된다.
 - 긴급구조기관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 **구조를 요청한자의 개인위치정보** :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 ※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목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 ※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경찰관서가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시행령 제28조의2】

1. 구조받을 사람이 사전에 경찰관서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알리고,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3. 그 외의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직접 구조받을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 실종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 실종아동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참고 실종아동법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 경찰관서의 권한 : 경찰관서는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③ 기타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긴급구조 요청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 경찰관서의 책무 :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②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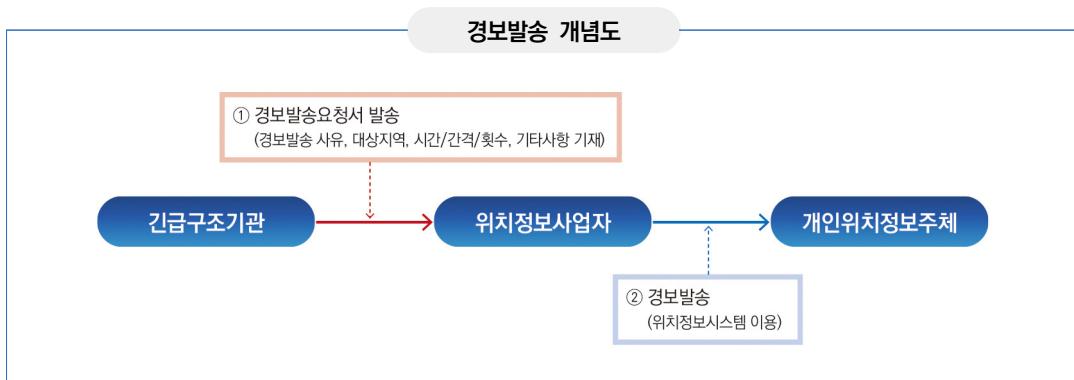
※ 경찰관서가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시행령 제30조의2】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이 중 개인위치정보는 기록·보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목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5.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호출에 따른 요청시 위치정보 제공의무를 가진다. 이 경우 통신망의 종류나 음성호출 여부와 관련 없이 긴급구조 호출이 이루어진 통신망이나 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위치정보사업자가 그 대상이 된다.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 측위 방식에 의해 수집하게 되는 개인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경찰관서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 역시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 “긴급구조의 요청자”는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112번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4.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경보발송의 요청** :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 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신속하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 요청을 할 수 있다.
- **경보발송 요청방법** : 경보발송을 하고자 하는 긴급구조기관은 ① 경보발송 요청사유(태풍, 호우, 화재 등), ② 경보발송 대상지역(서울·경기지역 등), ③ 경보발송 시간·간격 및 횟수, ④ 기타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경보발송요청서」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기관은 ①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보존 장치와 ②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 **경보발송 방법** :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위치정보사업자의 위험지역 경보발송은 문자방송(Cell Broadcasting System, CBS) 또는 단문·장문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S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MMS)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CBS는 특정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단말기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채널을 보유한 단말기만 수신이 가능한 방법이다.
 - SMS·MMS는 단말기 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단말기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단말기에 한하여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단말기 번호를 추출한 후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 **위치정보사업자의 의무** : 긴급구조기관의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할 수 없으며, 경보발송은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5.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긴급구조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사용한 자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제5호 제6호
○ 긴급구조 요청 또는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5호
○ 긴급구조요청을 하위로 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11호
○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12호

6. 해외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현황

- **미국** : 「무선통신과공중안전에관한법률 (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에서는 응급구조시 이동통신사업자의 협조사향(Enhanced 911)을 규정하여 경찰, 소방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발신자 위치를 파악하여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연방통신위원회는 전자통신법 제222조에 따라 연방규정(FCC Wireless 911 Requirements)을 제정(2000. 8)하여,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동화된 위치 확인장치(Automatic Location Identification, ALI)를 통해 수집한 위치정보를 공공구조 기관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하였다.
- **일본** : 현재 2015년 개정된 총무성 고시인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긴급구조시 전기통신사업자는 구조 또는 구출을 필요로 하는 자를 수색하고 구조하는 경찰, 해상보안청 또는 소방,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조를 요하는 자의 위치정보 취득을 요구받은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임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해당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제26조제4항).
- **유럽연합(EU)** : 유럽연합은 보편적 서비스 지침(Universal Service Directive, 2002/22/EC⁵⁾)을 통하여 유럽전역의 공통된 긴급구조서비스인 E-112의 법제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럽 공용의 응급전화번호인 '112'에 응답하는 긴급구조서비스센터에 통신사업자가 발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5) 2009/136/EC에서 일부 개정

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3. 3. 23., 2015. 2. 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4.〉](#)

[제목개정 2012. 5. 14.]

1.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에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유·노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때,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없는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의3】](#)

2. 국회 자료제출

-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제공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일정한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의4 제1항】](#)
 -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 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참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 긴급구조요청과 관련된 자료(법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
 - 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건수 및 일시
 - 나.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제공을 요청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 다.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된 자료(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자료)
 - 가.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자
 - 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받거나 제공한 건수 및 일시
 - 다. 요청받거나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 라. 요청 또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해당 규정

-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일정한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의4제2항】
 -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 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참고 위치정보사업자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 및 일시
2.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3.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

제30조의2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3.]

1. 규정취지

- 개인위치정보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구조기관은 구조를 요청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 **이용목적** : 긴급구조 요청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요청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긴급구조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
- **이용정보** :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에 기록된 등록사항(① 등록기준지, ②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 등록정보【가족관계등록법 제9조】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3. 유사입법례

● 「신문 등의 진통에 관한 법률」 제38조

- 신문법 제38조는 시·도지사는 “소유제한 등 위반 여부의 확인” 및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비용의 감면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1. 규정취지

- 긴급구조 서비스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서비스로서 위치정보법으로 정한 긴급구조기관에 한정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같이 공공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가 제공·이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감면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감면대상 비용의 범위

-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치정보의 설비 및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이용수수료 또는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통신망이용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유사 입법례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요금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는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등을 요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5. 14., 2018. 4. 17.,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4. 17.〉

1. 규정취지

- 정부와 국회는 긴급구조 및 경보발송을 목적으로 한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취지에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및 경보발송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통계자료 제출

-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및 경보발송 요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의 내용 :** 경보발송과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 월별 건수”와 긴급 구조와 관련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 월별 건수”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의 제출 방식 :** 통계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3항

VII

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 등

-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 제35조의2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 제36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36조의2 시정조치 등
- 제37조 청문
-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8조의2 법적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8조의3 준용 규정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규정취지

-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이용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및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단말장치의 개발과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다.
 - 이를 위해 기술개발의 추진주체인 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위치정보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된 기술”이란 ① 이동통신망, GPS, Wi-Fi, 비콘, RFID 등을 통해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측위기술(Location Detection Technology, LDT), ② 안정적으로 위치정보를 저장·보관·전송할 수 있는 서버기술, ③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규 응용기술, ④ 개인위치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기술 등을 말한다.
-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된 기기”란 무선통신이 가능한 이동전화, 위성측위장치 또는 Wi-Fi 수신기가 부착된 단말기, 비콘, RFID칩 리더기 등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이라 함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시행령 제31조】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13.〉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 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④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3. 1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13., 2013. 3. 23., 2017. 7. 26.〉

1. 규정취지

-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관련 기술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긴급구조 등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위치정보 이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

- **표준화의 대상** : 방송통신위원회가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표준화 대상 기술로는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② 위치정보 수집, 저장·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③ 긴급구조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④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기술을 말한다.

- 예를 들면, 긴급구조기관과 위치정보사업자간의 긴급구조를 위한 기술적 접속장치의 표준, 사업자 간 위치정보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텔레매틱스 등 산업 인프라에 관련된 표준, 위치정보 제공시 위치정보의 유출이나 권한없는 접근방지를 위한 기술의 표준 등이 이에 해당된다.
- **표준화의 지정·고시 및 권고** : 방송통신위원회는 표준화 대상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항목은 고시를 통해 표준을 지정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1. 규정취지

- 위치정보기술 및 응용서비스는 향후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원동력이 될 전망이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산업·생활·복지 등 각 분야에서 위치정보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이에 대한 지원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위치정보 이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33조】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 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 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업 추진방법**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치정보 이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1. 규정취지

- 개정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협회의 법적성질

-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3. 협회의 사업 및 감독【시행령 제33조의2】

- 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재도 개선의 건의
2.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3.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인력 양성 지원
4. 위치정보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5.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 6.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7. 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 연구
-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지원
- 9. 그 밖에 위치정보산업 발전과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각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2. 3.〉](#)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9.〉](#)

[전문개정 2015. 2. 3.]

1. 규정취지

-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의 사업장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위 실태점검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제출권한 및 검사권한을 규정하여 등록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2. 위치정보법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위반혐의를 포착한 경우, 신고·민원을 접수한 경우,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소유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

사고 등의 발생(위치정보 유출 등), 향후 위치정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장 등의 출입 및 검사(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물품·서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점검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또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기술적 지원업무를 위치정보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4. 실태정기점검 및 자료제출요구권[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실태 정기점검 사항 [시행령 제35조]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여부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3. 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 여부와 그 통지 여부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여부
5.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7.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파기 현황

-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5. 소속 공무원의 검사[제4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
○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6조의2 시정조치 등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1. 규정취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던 허가제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록 가능한 등록 제로 완화하면서도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종전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2.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행령 제36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한 후 이를 명하여야 한다.
 - 이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개정 위치정보법은 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5-15)」에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자」를 수변대상자로 추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3.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시행령 제37조]

-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별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거나 연 2회 이

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뤄질 수 있으며,

-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유사입법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69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8조의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한 후 이를 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 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였다. 한편, 해당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5.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문
○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15호

제37조 청문

제3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2021. 10. 19.〉](#)

1. 규정취지

- 사업의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폐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위치정보사업 등의 개폐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결정할 때에는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 청문은 이러한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불필요한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 청문의 실시대상 및 방법

가. 청문의 실시대상

-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처분, ②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청문의 실시방법

-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업자에게 처분사유, 청문일시 및 장소를 사전에 고지하고 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3.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4. 제36조제1항부터 4항까지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3.]

1. 규정취지

- 위치정보 관련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전문기관에 대한 권한 위탁(시행령 제37조의2)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정보통신망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시행령 제37조의2제1항】

〈 위탁 내용 〉

- | |
|--|
|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 |
|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 |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2. 3.]

1. 규정취지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을 「형법」 상 뇌물죄 관련 조항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형법 상 관련 규정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8조의3 준용 규정

제38조의3(준용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0. 19.>

[본조신설 2015. 2. 3.]

1. 규정취지

-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신고가 면제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치정보 유·노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필요한 일부 조항을 준용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

2. 준용내용

1.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법 제16조제1항·제3항 】
2.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 법 제17조 】
3. 위치정보 관련 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 법 제28조제1항 】
4. 위치정보 수집 등에 관한 표준 준수	【 법 제34조 】
5. 위치정보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한 지원 대상	【 법 제35조 】
6.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법 제36조제1항·제2항 】

부록

1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회원 가입 절차 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DB에 저장하고 주변 매장 안내 등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결합하지 않더라도 개인위치정보에 해당이 되는지?

- ▶ 법 제2조제2호에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됨

질문
2

개인사업자도 개인위치정보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 ▶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의 대상은 법인사업자에 한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음

질문
3

위치정보수집 단말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기준에 해당되는지?

- ▶ 단말기를 제조하는 것일 뿐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등록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문
4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양도, 합병·분할 시 인가 또는 신고의 주체는?

- ▶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양도, 합병·분할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가 또는 신고의 주체가 되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경우 인가를, 사물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함

질문
5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양도, 합병·분할 인가 및 신고 이후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 ▶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양도 등의 사실과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를 모두 수행해야 함

질문
6

운영중인 위치정보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해당되는 절차가 있는지?

- ▶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사물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신고)을 얻어 휴·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을 정하여 승인(사물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신고)을 얻어야 함. 통보방법의 경우 휴·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과 사유, 일시(휴업의 경우 재개일시 포함) 등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 또한 휴·폐업 이후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하여야 함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만 파기)

질문
7

이미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기업이 신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이용약관을 공개해야 하는지?

- ▶ 등록 및 신고는 사업자 단위로 등록 및 신고하는 것이며, 추가되는 신규서비스가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 해당된다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

질문
8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약관 형태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필수항목을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음

질문
9

이용약관 공개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지?

- ▶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함

질문
10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용약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 해당 위치정보서비스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합하여 운영 가능함. 하지만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용약관의 명시사항이 일부 다르므로 이것들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법 제18조제1항과 제19조제1항 참고)

질문
11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이후 위치정보 관리지침을 내부적으로 별도 마련해야 하는지?

- ▶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절차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함

질문
12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단말기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위치정보가 DB형태로는 저장되지 않는 대신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수 초간 저장되고 서비스 제공 후 바로 삭제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를 적용해야 하는지?

- ▶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시스템 내의 휘발성 저장장치(예, RAM 등) 등에 위치정보를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가 평문으로 저장 및 처리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치정보의 전송구간에서는 구간 암호화를 적용해야 함

질문
13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얼마동안 보존해야 하는지?

-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의무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이러한 위치정보접근사실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질문
14

이용자 본인이 인지하고 본인의 위치를 직접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매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지?

- ▶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용자 본인에게 제공 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단, 제19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모아통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음

질문
15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자는 위치정보시스템에서 개인위치정보를 반드시 즉시 파기해야 하는지?

- ▶ 법 제23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때부터 최대 1년까지만 보유 가능함

질문
16

14세 미만 또는 8세 이하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용약관에 관련조항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 ▶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14세 미만 또는 8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관련조항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음 단, 회원가입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함

질문
17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차량 사고 시 보험업체, 민간 견인·구조 업체 등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 ▶ 법 제29조제1항에서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 찰청·경찰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업체, 견인 및 구난 업체는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에는 포함되지 않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 서와 해양 재난 발생의 경우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부록

2

법률, 시행령 등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17호(2021. 10. 19. 일부개정, 시행: 2022. 4.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22., 2015. 2. 3., 2020. 6. 9., 2021. 10. 19.>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

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24.〉](#)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6. 9.〉](#)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21. 10. 19.〉](#)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록·변경등록의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0. 19.]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0. 19.>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0. 19.>

[본조신설 2018. 4. 17.]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15. 2. 3., 2015. 12. 1., 2018. 4. 17., 2020. 6. 9., 2020. 12. 8., 2021. 10. 19.>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고, 접근권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접근권한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5. 12. 1., 2020. 6. 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또는 접근권한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업원이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 2020. 6. 9.>

[제목개정 2015. 12. 1.]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4. 17.〉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1.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⑥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5. 2. 3., 2018. 4. 17.〉

⑦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2018. 4. 17.〉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

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 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5. 2. 3., 2018. 4. 17.>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4. 17., 2021. 10. 1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및 내용

-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4. 17.〉](#)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8. 4. 17.〉](#)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18. 4. 17.〉](#)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하고자 하

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4.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 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8. 4. 17., 2020. 6. 9.〉

[제목개정 2018. 4. 17.]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 1의2. 제5조제5항에 따라 부가된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 나.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 다.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4.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 4의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5. 삭제 [\(2021. 10. 19.\)](#)
 6. 삭제 [\(2021. 10. 19.\)](#)
 7. 삭제 [\(2021. 10. 19.\)](#)
 8. 삭제 [\(2021. 10. 19.\)](#)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목개정 2021. 10. 19.]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기록·보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21. 10. 19.]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통칙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
-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6. 9.〉](#)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 ⑤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

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이용 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2. 3.〉](#)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0. 19.]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10. 19.〉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0. 19.〉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2. 3.〉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② 제18조제2항·제19조제5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2020. 6. 9.>

-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11., 2014. 10. 15., 2015. 2. 3.>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4. 11., 2011. 3. 30., 2014. 10. 15., 2015. 2. 3., 2016. 5. 29., 2018. 4. 17., 2020. 6. 9.>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④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20. 6. 9.〉

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②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개정 2018. 4. 17.〉](#)
-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 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19.〉](#)
-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 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로 한정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2. 3.>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5. 14.]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3. 3. 23., 2015. 2. 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4.>

[제목개정 2012. 5. 14.]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3.]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5. 14., 2018. 4. 17.,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4. 17.>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13.>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 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④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3. 1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13., 2013. 3. 23., 2017. 7. 26.>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5. 2. 3.〉](#)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9.><
[전문개정 2015. 2. 3.]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3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2021. 10. 19.><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3.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4.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3.]

제38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2. 3.]

제38조의3(준용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0. 19.〉](#)

[본조신설 2015. 2. 3.]

제6장 별칙

제39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5. 14.,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제40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5. 14., 2015. 2. 3., 2018. 4. 17., 2020. 6. 9.〉](#)

1. 제5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 4의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2. 3., 2018. 4. 17., 2020. 6. 9.〉](#)

1. 삭제 [〈2021. 10. 19.〉](#)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자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5.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14., 2015. 2. 3., 2018. 4. 17., 2018. 12. 24., 2020. 6. 9., 2021. 10. 19.›
1.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7.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8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8의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11.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1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14.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1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
1.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20. 6. 9. >
 - ⑤ 삭제 <2015. 2. 3.>
 - ⑥ 삭제 <2015. 2. 3.>
 - ⑦ 삭제 <2015. 2. 3.>
⑧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5. 14. >
 - ⑨ 삭제 <2015. 2. 3.>

부칙 <제18517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 법 시행일 전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5조(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처분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심사에 있어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으로 본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98호 (2022. 4. 19., 일부개정, 시행 : 2022. 4. 20.)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 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1. 별표 1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22. 4. 19.〉](#)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2. 4. 1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2022. 4. 19.〉](#)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4. 19.〉](#)

[제목개정 2022. 4. 19.]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4. 19.〉](#)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8. 3.〉](#)

[제목개정 2022. 4. 19.]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① 삭제 [〈2008. 12. 31.〉](#)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 12. 31., 2018. 10. 16., 2022. 4. 19.〉](#)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8. 10. 16., 2022. 4. 19.〉](#)

[제목개정 2022. 4. 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4. 19.〉](#)]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7. 등록조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제목개정 2022. 4. 1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4. 19.〉](#)]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18. 10. 16.〉](#)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합병·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18. 10. 16.〉](#)

1. 합병·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제목개정 2018. 10. 16.]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8. 3.]

[제목개정 2018. 10. 16.]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분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승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18. 10. 16., 2022. 4. 19.›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제목개정 2018. 10. 16.]

제8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되, 사업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8. 10. 16.]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0. 16., 2022. 4. 19.〉](#)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8. 10. 16.〉](#)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변경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18. 10. 16.〉](#)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분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18. 10. 16.〉](#)

1. 합병·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분할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개정 2008. 12. 31., 2015. 8. 3., 2018. 10. 16.〉](#)

[제목개정 2018. 10. 16.]

제13조(이용약관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 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려는 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8. 10. 16.]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이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해당사업연도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4. 19.〉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은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1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9.〉

④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7. 9., 2022. 4. 19.〉

⑤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4. 19.〉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이나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삭제 〈2022. 4. 19.〉

② 삭제 〈2022. 4. 19.〉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위한 위치정

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 12. 31., 2021. 2. 17., 2022. 4. 19.〉](#)

제18조 삭제 [〈2022. 4. 19.〉](#)

제19조 삭제 [〈2022. 4. 19.〉](#)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19.〉](#)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7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1. 점검의 근거 및 목적
2. 점검 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
4. 점검 내용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즉시 통보받는 방법과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 중 선택하여 통보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동의와 구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또는 기간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요청 방법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횟수 또는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 8. 3.〉](#)

1. 횟수: 10회, 20회 또는 30회 등 10배수의 횟수
2. 기간: 10일, 20일 또는 30일

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4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는 경우 최초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이 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제4항제1호에 따라 모아서 통보한 후 남은 정보제공내역

2.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횟수가 제4항제1호에 따라 동의한 횟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정보제공내역

[제록개정 2015. 8. 3.]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본조신설 2022. 4. 19.]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③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

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때부터 최대 1년까지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실태를 점검하게 하려는 경우 점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19.]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22. 4. 19.>]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26조의2에서 이동 <2022. 4. 19.>]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12. 31.>

1. 긴급구조가 필요한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긴급구조를 요청한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받을 사람이 사전에 경찰관서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알리고,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직접 구조받을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구조받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에 할 수 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는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1. 15.]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2. 11. 15.〉](#)

1.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119
2.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3.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1.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2.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3. 경보를 발송할 시간·간격 및 횟수
4. 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보존 장치
 2.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법 제29조제9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경찰관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관하는 법 제29조제9항제3호의 사항 중 개인위치정보는 기록·보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15.]

제30조의3(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1. 15.]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1.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건수 및 일시

나.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제공을 요청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다.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

2.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자료

가.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자

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받거나 제공한 건수 및 일시

다. 요청받거나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라. 요청 또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해당 규정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2018. 10. 16.>

1.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 및 일시

2.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3.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본조신설 2012. 11. 15.]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 월별 건수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 월별 건수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18., 2009. 8. 21., 2010. 7. 9., 2013. 3. 23., 2017. 7. 26., 2020. 12. 8.〉](#)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제32조(표준화의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6. 25.]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

- 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3.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4. 위치정보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5.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6.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 연구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지원
9. 그 밖에 위치정보산업의 발전과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본조신설 2022. 4. 19.]

제34조(자료제출 요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치정보의 유출 등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 8. 3.]

제35조(실태 정기점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여부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3. 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 여부와 그 통지 여부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여부
 5.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7.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파기 현황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9.]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그 공표 대상자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4. 19.]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4. 19.]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5. 8. 3.]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8. 3., 2018. 10. 16., 2022. 4. 19.›

1. 법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휴업·폐업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5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무
 11.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 ②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본조신설 2013. 1. 16.]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 7. 9.]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3,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5. 4., 2010. 11. 2., 2018. 10. 16., 2022. 4. 19. >

제40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부칙 <제32598호, 2022. 4. 1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5호 중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으로 한다.

[별표 1]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2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기재사항
1. 법인요건	등록신청 법인에 관한 기본적 사항
가. 등록신청 법인의 명세	1) 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2) 구성 주주의 역할 및 책임(설립예정 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나. 법인 조직에 관한 사항	1) 등록신청 법인의 조직 형태 2) 임원들의 인적 사항 및 권한
다. 등록신청 법인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3년간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사업개요	사업의 세부내용
사업 세부내용	1) 제공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2) 사업의 개시 시기, 지역 등 단계별 사업계획
3. 시스템의 구성(물적 설비)	사업개시 후 3년까지의 시스템 구성계획
가. 소요설비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주요 소요설비 세부 내역
나. 시스템 체계	1) 수집·제공·관리 시스템 설계, 구축 및 배치 개요 2) 구성요소별 기능 및 제원, 구성요소 간 접속방식 등 시스템 세부사항
다. 시스템 품질보증	정확도, 응답시간, 수집성공률, 수집빈도 등 시스템의 품질보증 사항
4.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사업개시 후 3년까지의 보호조치 계획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

[별표 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1. 재무구조의 적정성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가. 수익성: 총자산 영업이익률 나. 안전성: 부채비율 다.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나.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다.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3.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자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

[별표 2의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관련)**

구분	기재사항
1.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가. 법인의 명세 및 조직	법인에 관한 기본적 사항 1) 법인의 명칭 및 자본금 규모 2) 법인의 조직 형태 3) 임원들의 인적 사항 및 권한 4)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3년간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사업개요 사업 세부 내용	사업양수 또는 합병·분할된 날부터 3년까지의 사업의 세부 내용 1) 양수, 합병·분할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2) 사업의 개시 시기, 지역 등 단계별 사업계획
3. 시스템 구성·운영 계획(물적 설비) 가. 소요설비 나. 시스템 체계	사업양수 또는 합병·분할 후 3년까지의 시스템 구성·운영 계획을 적는다. 주요 소요설비 세부 내역 1)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확장 및 배치 내역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 3)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 계획 4)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 정확도, 응답시간, 수집성공률, 수집빈도 등 시스템의 품질보증 사항
4.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위치정보사업에 관한 보호조치 계획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

[별표 2의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6조의2제1항 관련)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p>가.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성: 총자산 영업이익률 2) 안전성: 부채비율 3)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p>나.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정보시스템 주요 설비 내역 2)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3)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p>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p>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p>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p> <p>나.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의 계속적인 수행 가능 여부</p> <p>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p>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개별기준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이거나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인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를 할 수 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업자 구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인기를 받거나 법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등록(인가) 취소	-	-
		사물위치정보 사업자	사업폐지	-	-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폐지	-	-
1의2.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가된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2.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사물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때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다. 법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사물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업자 구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4.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법 제13조제1항제4호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사물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
5.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2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6개월 이내 또는 등록취소		
		사물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6개월 이내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6개월 이내		

[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다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라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2)에 따라 산출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3)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서비스 제공 방식

나) 서비스 가입 방법

다)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범위

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3) 부과기준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	1천분의 15

4) 1)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	2억원

5) 3)의 표 및 4)의 표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고의·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위치정보 관련 피해규모, 위치정보의 공증(公衆)에 대

한 노출 여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필수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라. 추가적 가중·감경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은 사업정지 기간에 나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사업정지 기간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으로 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세부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600	1,200	2,000
다.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300	600	1,000
라.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	600	1,200	2,000
마. 법 제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300	600	1,000
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3호	300	600	1,000
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2	300	600	1,000
아.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4호	300	600	1,000
자.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 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5호	300	600	1,000
차.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6호	300	600	1,000
카. 법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7호	300	600	1,000
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4호	600	1,200	2,000
파.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7호의2	300	600	1,000
하.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8호	300	600	1,000
거.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8호의2	300	6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너.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5호	600	1,200	2,000
더.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9호	300	600	1,000
러.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8호의3	300	600	1,000
머.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0호	300	600	1,000
버.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1호	300	600	1,000
서.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2호	300	600	1,000
어.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2호	150	300	500
저.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3조제2항제13호	300	600	1,000
치.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3조제2항제14호	300	600	1,000
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5호	300	600	1,000

부록

3 법령서식

- 제1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 제1호의2.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 제2호.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
- 제3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
- 제3호의2.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확인증
- 제4호.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합병·분할인가신청서)
- 제4호의2.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 상속신고서, 합병·분할신고서)
- 제5호. 개인위치정보사업(전부 휴업 승인신청서, 일부 휴업 승인신청서, 전부 폐업 승인신청서, 일부 폐업 승인신청서)
- 제5호의2. 사물위치정보사업(전부 휴업신고서, 일부 휴업신고서, 전부 폐업신고서, 일부 폐업신고서)
- 제6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 제6호의2.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 제7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 제8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상속신고서, 합병·분할신고서)
- 제9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지·폐지신고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 [] ① 등록신청서
[] ② 변경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①등록 신청시	사업의 종류 및 내용		
	개인위치정보사업용 주요설비		
②변경 등록시	주요	기 존	
	변경사항	변 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① 등록신청시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② 변경 등록시	1.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등록신청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② 변경 등록시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사항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사물위치정보사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주소				
①신고시	사업의 종류			
	사물위치정보사업 주요 설비			
②변경시	주요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① 신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1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② 변경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신고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변경시	

해저저보 고도이윤 도이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과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고인(대표자) (성명 또는 이)

처리전차



210mm × 297mm [백상지(80g/m²)]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주소		
주요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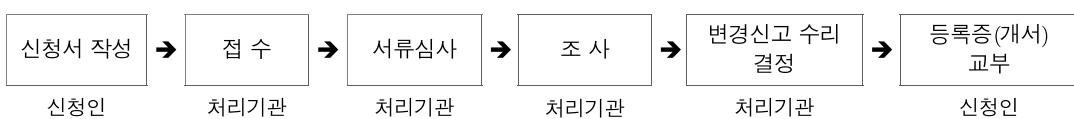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2.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2.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사항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

등 록 번 호 : 제 호

상호(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사 업 종 류 :

등 록 조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함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직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확인증

신 고 번 호 : 제 호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사 업 종 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신고함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 [] ① 양수인가신청서
[] ② 합병·분할인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①양도, ②피합병 (분할) 또는 소멸 법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주소		
①양수, ②합병(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	상 호(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주소(주된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E -Mail
	홈페이지주소		
양수 또는 합병(분할) 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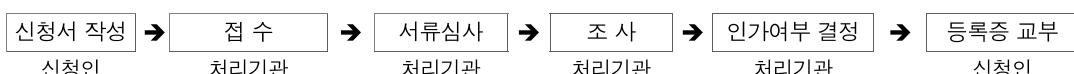
신청인 (성명 또는 이)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신청인 : 약수인 또는 현재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法人·부활 당사자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① 양수시	1. 사업계획서 1부. 2.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1부.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② 합병·분할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1부.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양수시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② 합병·분할 시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처리적 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 ① 양수신고서
사물위치정보사업 [] ② 상속신고서
[] ③ 합병·분할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양도, ②피상속, ③피합병(분할) 또는 소멸 법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주소 사망일자	※ 피상속의 경우만 기재	
①양수, ②상속, ③합병(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본적지 대표 전화번호	※ 상속의 경우만 기재
	주소(주된 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양수 및 상속 또는 합병(분할)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① 양수시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1부.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② 상속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합병·분할시	1. 합병·분할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1부.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1부.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양수시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상속시	해당 없음
	③ 합병·분할시	합병·분할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개인위치정보사업**
- [] ① 전부 휴업 승인 신청서
[] ② 일부 휴업 승인 신청서
[] ③ 전부 폐업 승인 신청서
[] ④ 일부 폐업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주소				
휴업 예정기간 또는 폐업 예정일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				
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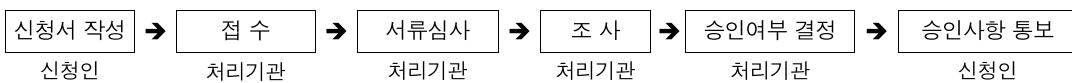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1부. |
| |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 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3.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증명서류 1부.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5호의2서식]

- [] ① 전부 휴업신고서
 - [] ② 일부 휴업신고서
 - [] ③ 전부 폐업신고서
 - [] ④ 일부 폐업신고서

사물위치정보사업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주소			
휴업 예정기간 또는 폐업 예정일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			
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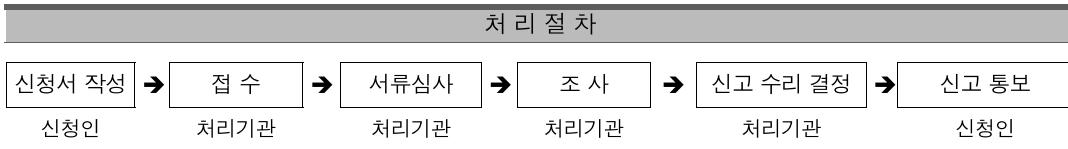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시고인

군월일
(설명 또는 오)

방송통신위원회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1부. 2.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증빙서류 1부.
----------------------	---



210mm × 297mm [백상지(80g/m²)]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① 신고서
[] ②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주소			
①신고시	사업의 종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용 주요 설비		
②변경시	주요 변경사항	기 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설명 또는 일)

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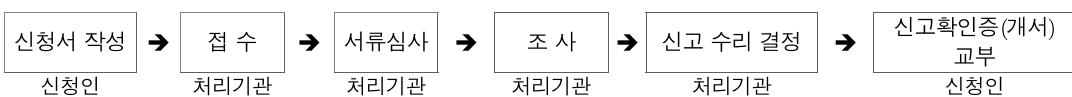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① 신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1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시유로 인한 신고에 한함) 1부.
	② 변경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종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신고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② 변경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해저저보 고도이유 도이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① 신고서
[] ②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주소				
①신고시	사업의 종류			
②변경시	주요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신고인 (대표자)	① 신고시	1.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1부.
제출서류	② 변경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신고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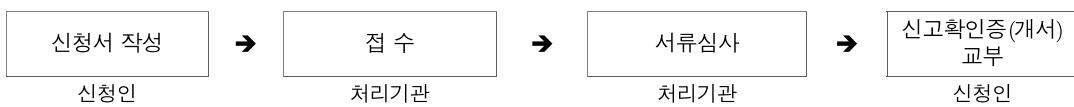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신 고 번 호 : 제 호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사 업 종 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함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① 양수신고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② 상속신고서
 [] ③ 합병·분할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양도, ②피상속, ③피합병 (분할) 또는 소멸 법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담당자	E-Mail
사망일자	※ 피상속의 경우만 기재		
①양수, ②상속, ③합병(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본적지	※ 상속의 경우만 기재
	주소(주된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담당자	E-Mail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경우만 기재	
양수 및 상속 또는 합병(분할)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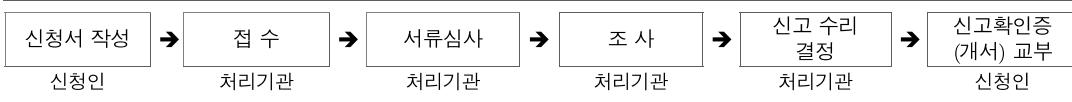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① 양수시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1부.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② 상속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합병·분할시	1.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1부.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1부.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양수시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상속시	해당 없음
	③ 합병·분할시	합병·분할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주소		
휴업 예정기간 또는 폐업 예정일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			
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1부.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 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3.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파기 증명서류 1부.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부록

4

(참고) 이용약관 예시안

1. 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안)
2.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안)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한정함

※ 본 약관은 참고사항이며, 위 약관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안)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사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 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 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 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치정보의 보 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 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 정약관 적용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각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및 통지합니다.

1. 위치정보사업자 홈페이지 등 게시 : 개정약관 적용일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 간(○○일 기간)

2.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 : 개정약관 적용일로부터 30일 전

⑤ 회사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3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 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등) ①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보유목적과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명	수집방법	서비스 내용 및 (보유)목적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0개월간 보관합니다.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3항의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회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제6조(서비스 추가·변경)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수집·제공 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집·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위치정보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제9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0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1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제공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수집·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고객센터 등 구체적 절차 기술)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

집·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3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5조(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 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7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
2. 대 표 자 : ○○○
3. 주 소 : ○○○
4. 대표전화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0000년 00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팀/부서
2. 연락처 : ○○○

〈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법적요건 〉

이용약관 조항	법적요건	비고
제1조(목적)	(참고) 일반사항	-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법 제18조제1항 동의부분
제3조(관계법령의 적용)	(참고) 일반사항	-
제4조(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등)	(필수) ①, ②항 약관 필수 기재사항	①항 법 제12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3호 서비스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 4의2호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②항 법 제18조제1항 4호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권고) ③항 법적의무사항	③항 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6조의2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필수) ①, ②, ③항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필수 기재사항	①항 법21조의2 1호 ②항 법21조의2 2호 ③항 법21조의2 3호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 요금 및 조건
제6조(서비스 추가·변경)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법 제18조제1항 동의부분
제7조(수집·제공 제한 및 중지)	(참고) 일반사항	-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시행령 제22조 수집방법
제9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권고) 법적 의무 사항	법 제20조, 시행령 제25조
제9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의 제한)	(권고) 법적 의무 사항	법 제21조
제10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법 제18조제1항 2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법 제24조
제1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법 제18조제1항 2호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법 제25조,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12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권고) 법적 의무 사항	①항 법 제26조제1항, ②항 법 제26조제2항, ③항 시행령 제27조, ④항 법 제26조제4항
	(필수)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필수 기재사항	시행령 제25조제1항 2호 8세 이하 보호 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13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권고) 법적 의무 사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1호
	(필수)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필수 기재사항	시행령 제25조의2 3호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업무·고충처리 부서 명칭과 연락처
제14조(손해배상)	(권고) 법적 의무 사항	법 제27조
제15조(면책)	(참고) 일반사항	-
제16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참고) 일반사항	-
제17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권고) 법적 의무 사항	법 제28조
제18조(회사의 연락처)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법 제18조제1항 1호
부칙	-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안)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회사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각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및 통지합니다.

1. 서비스 홈페이지 등 게시 : 개정약관 적용일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일 기간)

2.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 : 개정약관 적용일로부터 30일 전

⑤ 회사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3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등)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및 (보유)목적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 ○○	○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의 가까운 음식점 검색 정보 제공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개월간 보관합니다.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3항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회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제6조(서비스 추가·변경) 회사가 서비스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합니다)을 즉시 통보합니다.

④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O일마다 또는 O회씩)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사의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전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6) 회원은 제1항·제2항·제5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의 경우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0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고객센터 등 구체적 절차 기술)를 통해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 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2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4조(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

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6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
2. 대 표 자 : ○○○
3. 주 소 : ○○○
4. 대표전화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0000년 00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팀/부서
2. 연락처 : ○○○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법적요건 〉

이용약관 조항	법적요건	비고
제1조(목적)	(참고) 일반사항	-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 동의부분
제3조(관계법령의 적용)	(참고) 일반사항	-
제4조(서비스의 내용 등)	(필수) ①, ②항 약관 필수 기재사항	①항 법 제12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 3호 서비스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 4호 2호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②항 법 제19조제1항 4호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권고) ③항 법적의무사항	③항 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6조의 2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필수) ①, ②, ③항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사항	①항 법 21조의2 1호 ②항 법 21조의2 2호 ③항 법 21조의2 3호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 요금 및 조건
제6조(서비스 추가·변경)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 동의부분
제7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참고) 일반사항	-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시행령 제23조 제3자 제공 통보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2 4호, 시행령 제25조의2 1호
제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권고) 법적 의무 사항	법 제21조
제10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 2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법 제24조
제1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 2호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법 제25조,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12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권고) 법적 의무 사항	①항 법 제26조제1항, ②항 법 제26조 제2항, ③항 시행령 제27조, ④항 법 제26조제4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사항	시행령 제25조제1항 2호 8세 이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13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권고) 법적 의무 사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1호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사항	시행령 제25조의2 3호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업무·고충처리 부서 명칭과 연락처
제14조(손해배상)	(권고) 법적 의무 사항	법 제27조
제15조(면책)	(참고) 일반사항	-
제16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참고) 일반사항	-
제17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권고) 법적 의무 사항	법 제28조
제18조(회사의 연락처)	(필수) 약관 필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 1호
부칙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22년 6월 인쇄

2022년 6월 발행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TEL : (02)500-9000
URL : <http://www.kcc.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TEL : 1544-5118
URL : <http://www.kisa.or.kr>

〈 비매품 〉

※ 본 해설서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